

碩士學位論文

教育自治 實現을 위한 學校運營委員會 改善 方案

-濟州道 公立 初·中·高等學校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李 曠 遠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 專攻

申 太 均

教育自治 實現을 위한 學校運營委員會 改善 方案

-濟州道 公立 初·中·高等學校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李 暻 遠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0年 7月 日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一般行政專攻

申 太 均

申太均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2000年 7月 日

委員長 (인)

委 員 (인)

委 員 (인)

目 次

第 I 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必要性과 目的	1
第2節 研究 方法 및 範圍	3

第 II 章 研究의 理論的 背景과 分析의 틀

第1節 教育自治와 單位 學校 運營	5
1. 教育自治의 基本 原理	5
2. 單位 學校 教育自治	9
3. 學校 經營 參與 組織의 役割과 必要性	12
第2節 우리 나라의 學校運營委員會 制度	20
1. 設置 背景 및 基本 趣旨	20
2. 構成·機能·運營 制度	23
第3節 分析의 틀	29
1. 分析 틀의 構成 및 要素	29
2. 調查 設計 및 內容	32

第 III 章 濟州道 初·中·高等學校 運營委員會 構成 現況 分析

第1節 濟州道內 學校運營委員會 構成 過程	35
第2節 '99學年度 學校運營委員會 構成 現況	36

第 IV 章 學校運營委員會 運營 實態 · 問題點 分析

第1節 學校運營委員會 運營 實態 分析	43
第2節 學校運營委員會 改善要求 事項 分析	58
第3節 學校運營委員會 問題點 要約	69

第 V 章 學校運營委員會 運營 改善方案

第1節 外國의 學校 運營 參與 組織 比較 및 示唆點	74
第2節 우리 나라 學校運營委員會 運營 改善 方案	79

第 VI 章 結論 및 提言

1. 結 論	87
2. 提 言	91
參 考 文 獻	93
Summary	96
附 錄 (設 問 紙)	100



〈表 目 次〉

〈표2-1〉	교육자치의 원리	7
〈표2-2〉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이점	23
〈표2-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24
〈표2-4〉	응답 대상자의 특성별 구성현황	33
〈표2-5〉	설문지의 문항 구성	34
〈표3-1〉	제주도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36
〈표3-2〉	제주도 학교 운영위원 정수별 학교수	37
〈표3-3〉	제주도 학교 운영위원별 위원의 수	37
〈표3-4〉	제주도 학교 운영위원의 연령별 분포	38
〈표3-5〉	제주도 학교 운영위원의 성별 분포	39
〈표3-6〉	학부모·지역위원의 직업별 분포	40
〈표3-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분포	41
〈표3-8〉	교원위원 교육 경력별	42
〈표3-9〉	교원위원 직급별	42
〈표4-1〉	학교운영위원회 기본취지 인식도	45
〈표4-2〉	운영위원 전문성 연수 이수 현황	46
〈표4-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필요성	47
〈표4-4〉	교원위원 선출 인사	48
〈표4-5〉	학부모 위원 선출 인사	49
〈표4-6〉	지역위원 선출 인사	50
〈표4-7〉	위원선출 과정에서 민주성 여부	51

〈표4-8〉	한 학년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회수	52
〈표4-9〉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큰 문제점	53
〈표4-10〉	소위원회 활동 사항	53
〈표4-11〉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 반영 실태	54
〈표4-12〉	학교운영위원회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위원별 영향력	55
〈표4-1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 평가	56
〈표4-1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 종합적 성과에 대한 평가	57
〈표4-15〉	학교운영위원회 기구의 필요성	58
〈표4-16〉	학교운영위원 중 위원장 적격 위원	59
〈표4-17〉	학교운영위원회 위상과 성격	60
〈표4-18〉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방안	61
〈표4-19〉	소위원회 활동 전망	61
〈표4-20〉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적정성	62
〈표4-21〉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방안	63
〈표4-22〉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의무화 방안	63
〈표4-23〉	위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	64
〈표4-24〉	교장을 운영 위원에서 제외하는 방안	65
〈표4-25〉	학부모회와 교직원회 안건 발의권 부여 방안	66
〈표4-26〉	운영위원회 연간 회의개최 횟수 의무화 방안	66
〈표4-27〉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	67
〈표4-28〉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결 방안	68
〈표5-1〉	외국과 우리 나라 학교운영 참여조직 특징 비교	75
〈표5-2〉	분권화·전문화·민주화 측면에서 본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동향	78

〈그림 目次〉

〈그림 2-1〉 연구 분석의 틀 도해	30
----------------------------	----



第 I 章 序 論

第1節 研究의 必要성과 目的

학교운영위원회는 1995년 5월 31일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으로 제안되었다. 교육개혁위원회는 신교육 체제의 기본 특징을 학습자 중심 교육의 다양화, 자율과 책무성에 바탕을 둔 학교 운영, 자유와 평등이 조화된 교육 등으로 제시하였다¹⁾ 1991년 지방교육자치제가 실시됨에 따라 학교 구성원들은 단위 학교에 자율성이 확대되고,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에 참여되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다. 그리고 사회의 변화 속에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 의식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었다.

이러한 학교 구성원들의 많은 기대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부 교육기관의 단위 학교에 대한 지시와 통제가 줄어들지 않고, 학교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참여 통로는 제한되어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체제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으며,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 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체제로 바꾸려는 교육 개혁 방안²⁾에 따라 교육 자치의 기본 단위로 출범하였다.

최근 한국 사회의 모두 분야에서 분권화·전문화·민주화를 위한 각 조직의 재구조화 추세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교육 분야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교육 개혁의 핵심 방안 중의 하나인 학교운영위원회가 시행된 지 5년째 들어서고 있다. 교육 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 활동이 직접 전개되고 있는 단위 학교의 자치가 이루어지는데 있다.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 학교의 자치가 명실 상부 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권화·전문화·민주화 등의 교육 자치의 원리가 단위 학교 운영에 적용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바로 학교교육에 반영하고, 단위 학교가 자발적으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 교육 개혁

1)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1995, p. 13.

2)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서울: 교육부, 1998), p. 3.

방안의 핵심 요소로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고, 학교 운영에 대한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대하여 심의 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발전기금을 조성·징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단위 학교 교육 자치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초·중·고등학교에 설치·운영된 지 4년이 경과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단위 학교 의사 결정 구조를 개선하여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의사 결정 구조로 바꿈으로써 학교 운영을 민주화하고, 교육 수요자의 교육적 이해와 관심을 존중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학교운영위원회가 본래적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학교를 갈등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교육 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되고, 그 개선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제도적인 제약 조건은 무엇인가,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정착화 하는데 야기되는 문제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실태와 문제점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에 기반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학교 단위 교육 자치가 실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연구·분석·제시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가 당초 의도한 대로 반영·실현되고 있는가?

둘째,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기능·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에 기초하여 교육 자치 기본 원리인 분권화·전문화·민주화의 원리에 준거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연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인식 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를 어떻게 인식, 활동하고 있는가?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기능·구성·운영 실태 현황을 조사하여 이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가?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하여 구성원들은 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분권화·전문화·민주화 영역별)은 무엇인가?

第2節 研究 方法 및 範圍

1. 研究 方法

1) 문헌 및 선행 연구분석

본 연구에 관련된 교육 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선행 연구물인 논문·교육전문 도서·교육부에서 발간한 자료들을 수집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교육 자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이론적 기초를 근거하여 교육 자치 기본 원리를 정리하고, 현행 우리 나라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와 외국의 학교 운영 참여 조직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가 1996학년도부터 학교별로 구성되기 시작하여 운영된 기간이 4년밖에 경과되지 않아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연구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 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초·중등교육법(법률, 제6,007호 1999. 8. 31 개정 2000. 3.1시행)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25호, 2000. 2. 28. 개정·공포)이 개정되었으나, 본 연구는 1999학년도 제주도내 공립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조사 대상으로 하여, 1999학년도에 운영 적용되었던 구법(舊法)인 초·중등교육법(법률, 제5,438호 1997. 12. 31)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 '98. 2. 24)을 중심으로 연구되었음을 밝혀 둔다.

2) 설문조사

실증 분석은 제주도 초·중·고등학교 1999학년도에 실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하였던 학교 운영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를 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win을 활용하여 연구 목적에 따라 분석하였다.

2. 研究 範圍

연구 내용은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은 서론으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를 기술하였다.

제2장은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의 틀로써, 교육 자치와 단위 학교 운영, 우리 나라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분석의 틀 등, 일반적 이론과 선행 연구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고 있다.

제3장은 제주도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과정과 현황을 분석하였다.

제4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여 기술하였다.

제5장은 외국의 학교 운영 참여 조직 비교 및 시사점과 우리 나라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은 결론 부분으로 결론과 제언을 기술하였다.

본 연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 ① 본 연구는 설문 대상 선정을 제주도내 공립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전국적으로 일반화하거나 사립학교에까지 확대 해석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 ② 학교경영 참여 구성원 인사의 인식 조사에서 표집의 대상을 학교운영위원회에 직접 참여하였던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에 한정하였다.

第 II 章 研究의 理論的 背景과 分析의 틀

第1節 教育自治와 單位 學校 運營

1. 教育自治의 基本 原理

우리 헌법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 된다고 선언하고 있고(제31조제4항), 이에 근거하여 우리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이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다'(제5조)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우리 나라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에, 우리 나라에서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민주성 및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을 보장한다고 해석되는 바, 이는 교육 자치가 지방 수준에 있어서는 특히 더 보장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³⁾ 교육 자치는 일반 행정 자치로부터 분리·독립을 추구하는 자치이다.

교육 자치제 아래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는 교육 자치제의 원리와 학교경영을 위한 일반적 원리들을 같이 고려한 기본 전제하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격과 내용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으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헌법 제31조⁴⁾·교육기본법 제5조⁵⁾·초·중등교육법 제2절 '학교운영위원회' 제31조⁶⁾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절 '학교운영

3) 최창호, 「지방자치학」 (서울: 삼영사, 1997), pp. 156-157.

4) 헌법 제31조④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5) 교육기본법 제5조(교육의 자주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지역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6) 초·중등교육법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①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의 초

위원회'와 각 시·도의 조례에서 그 내용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헌법 제31조에 따르면 교육 자치제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구와 제도로 명시되어 있다. 한편,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각 시·도 조례에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보다 구체적인 교육 자치제에 따른 기구와 시책을 수립·실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및 각시·도의 조례에서는 학교 단위 교육 자치 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과 기능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 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기반을 이루는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각 시·도의 조례 등에 내재되어 있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면, 교육 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 활동, 운영의 측면에서는 특수성, 전문성, 다양성, 창의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교육행정의 조직과 운영의 측면에서는 자율(분권)성, 전문성, 민주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학교 단위 교육 자치제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필요한 이유는 교육의 본질적 속성에서 유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 자치제의 원리는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김종철(1985)은 교육 자치제의 기본 원리로 ①지방 분권의 원리 ②자주성 존중의 원리 ③적합성 확립의 원리 ④전문성의 원리를 제시하고,

김운태(1985)와 남정걸(1988)은 김종철의 견해와 같이 하면서 '적합성의 원리' 대신 '주민 통제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김영철(1985)은 교육 자치에서 중앙 집권과 지방 분권을 중심으로 논리를 전개하면서 특히, 알맞는 정도의 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육 자치제 설명 자료(1988)는 교육 자치제의 기본 원리로 ①지방 분권의 원리 ②주민 참여의 원리 ③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④자주적 재정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으며⁷⁾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에서는 교육 자치제 원리로 ①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의 원리 ②지방 분권의 원리 ③주민 통제의 원리 ④전문성의 원리 ⑤단위 학교의 민주적 운영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⁸⁾

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교원대표·학부모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7) 김태완 외, "교육자치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89-14, 1989, p. 21.

8)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교육백서」(서울: 도서출판 풀빛, 1989), pp. 172-173.

우리 나라 교육 자치제에 대한 요소와 그 기본 원리를 학자들 간에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그 개요는 <표 2-1>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9)

표에서와 같이 대표적인 교육학자들이 제시하는 교육 자치제 원리는 ①지방 분권의 원리 ②민중 통제의 원리 ③일반 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 ④전문적 관리의 원리 등, 대체로 지방 교육 자치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2-1> 교육 자치의 원리

김 종 철	백 종 익	조 병 효	주 삼 환
① 자주성의 원리	①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의 원리	①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①전문적 자치의 원리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 헌법 제31조4항)
② 전문적 관리	② 전문적 관리	② 전문적 관리	② 전문적 관리
③ 지방분권의 원리	③ 지방분권의 원리	③ 지방분권의 원리	③ 지방분권의 원리
④ 주민통제의 원리	④ 주민통제의 원리	④ 주민통제의 원리	④ 주민자치의 원리 (주민통제, 지방분권)
		⑤ 자주적 경영	

出處: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1988).

주삼환 『장학·교장론: 교육의 질 관리』, (서울: 성원사, 1990).

교육 자치제 대한 선행 연구들의 제한점은 단위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제 문제들을 소홀히 하고 있거나 단위 학교 운영에 관련된 교육 자치의 원리를 깊이 있게 분석해 내지 못하고 있다. 단위 학교의 제 문제들은 그 동안 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학교장에게 집중된 권한인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교의 균형된 발전을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의 학교경영에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토록 촉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단위 학교의 문제들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의사 결정에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가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이른바, 단위 학교 내에서의 횡적·수평적 분권의 미흡에서 오는 것이다. 현재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경영의 자율화·민주화 등의 요구를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교육 자치라는 큰 틀 속에서 시행되고 있는

9) 이계준,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p. 19.

것이 아니라, 학교장 1인의 독점적 학교 운영을 견제하는 역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 실현에 초점을 두고 교육 자치의 원리를 세 영역으로 제시하면, 첫째, 분권화의 원리. 둘째, 전문화의 원리. 셋째, 민주화의 원리를 들 수 있으며, 선행 연구들이 제시하고 있는 교육 자치의 원리는 이 3개의 영역 속에 포함할 수 있다. 이들 각각의 원리를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¹⁰⁾

첫째, 분권화의 원리이다. 분권화의 원리는 종적 분권과 횡적 분권으로 나눈다. 종적 분권은 지방 분권의 원리이다. 지방자치가 행정 단위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한 장치이듯이, 교육에 있어서도 교육행정이 지방 분권화 되어 지역적 특수성과 학교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앙의 교육행정 기능이 대폭 지방으로 이양되어야 하고, 또한 상급 교육기관에서는 단위 학교에 권한을 대폭 위임되어야 한다. 이러한 지방 분권을 통해서만 중앙집권의 최대 결함인 관료성과 획일적 통제를 극복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횡적 분권의 원리이다. 교육 자치제가 올바르게 실현되려면 자치의 각 단위에서 수평적 분권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횡적 분권의 실현 없는 종적 분권은 교육 자치 단위 내부에서 일정한 형태로 교육행정의 집중화를 가져온다. 시·도 단위 학교에서 수평적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 실현은 형식적인 적용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선행 연구의 ‘지방 분권원리’ 단위 학교의 ‘민주적 운영의 원리’, ‘자주적 재정의 원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둘째, 전문화의 원리이다. 교육 활동의 본질과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 자치제는 교육 활동의 전문성과 교육행정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 학식과 덕망이 있다거나 교육 관계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능한 행정가라면 누구라도 교육행정을 할 수 있다는 통념을 깨고, 교육 조직의 특수성과 교육의 본질을 이해하고, 교육기관을 운영하는데 고도의 전문적 식견과 기술을 갖춘 인사가 교육행정을 맡아야 한다. 이처럼, 단위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 학교 단위 교육 자치 시행에 있어서 반드시 뒤따라야 할 부분은 교육에 관한 의사 결정과 관리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단위 학교를 경영함에 있어서도 교장 1인의 임의적 결정으로는 교사,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기 어렵다. 특히 교수-학습 활동에 관련되는 의사 결정에는 학생의

10) 권영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 : 대구·경북지역 국, 공립 중등학교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8, pp. 10-11.

요구와 교사들의 전문성에 기반 하여야 함은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 수준의 교육 자치 실현에 있어서 전문화의 원리는 매우 강조된다. 선행 연구의 '적합성의 원리'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 독립의 원리' '전문성의 원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셋째. 민주화의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사회 발전의 모든 영역에 있어 근본이다. 특히 교육 자치제 하에서 자치의 각 단위(시·도 단위, 학교 단위)는 구성원들의 참여를 조장하고, 진정한 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구성 주체들의 합리적 참여를 확대 보장하여야 한다. 특히 교사, 학부모 및 지역사회 등이 학교 운영의 의사 결정 과정에의 참여는 그 폭은 물론 질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데, 참여 집단의 의사 결정 참여의 질을 높이는 것은 짧은 기간에 되는 일이 아니다. 학교 경영자가 학교 운영에 대하여 변혁 지향적 지도력과 인내를 갖고 꾸준히 민주적으로 운영할 때 가능한 일이다. 또한, 참여를 희망하는 각 집단의 구성원들이 거리낌없이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위원 선출 등 구성 과정에서부터 민주적이어야 하고, 운영에 있어서도 개방적이어야 하는 등 민주적 원칙이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

결국 단위 학교의 민주적 운영의 원리가 교육 자치의 모든 원리 중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선행 연구의 '자주성 존중의 원리' '주민 참여의 원리' '민중 통제의 원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2. 單位 學校 教育自治

1) 단위 학교 교육 자치의 필요성

우리 나라의 교육 자치제는 8·15해방 직후 미군정 아래서 논의되기 시작하여 1949년 교육법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 혼란과 6·25로 실시가 지연되다가 1952년에 교육법시행령 제정, 지방자치 실시에 따라 비로서 시·도 단위 교육 자치가 출범하게 되었다. 그 후 5·16을 계기로 한때 중단되었으나, 1964년부터는 시·도 단위의 명목상 교육 자치제로 유지되어 오다가 1988년 교육법 개정과 1991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시·도 단위 광역 교육자치를 실시하게 되었다. 그 후 1995년 7월 26일 법률 제4951호로 '지방교육 자치에관한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이는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마련하는 등 지방 교육 자치의 조기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¹¹⁾

현행 지방 교육 자치제는 이전의 제도에 비하여 보다 정형에 가까워졌으나, 지방자치가 시·군·구 등의 기초 자치 단위까지 실시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육 자치는 특별시·광역시·도 등 광역 자치 단위이다, 따라서 학부모나 지역 주민들은 광역 단위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교육 자치의 실시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역 단위의 교육 자치는 단위 학교 자치를 이루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초 자치 단위까지 교육 자치를 확대하는데는 막대한 규모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면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이 교육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단위 학교 수준에서 학부모와 지역 주민의 참여 기회가 많아질 때 교육 자치는 확대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박종렬(1995)은 학교 자치가 필요한 이유로 교육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 중 교사의 변인이 미치는 영향이 미약한 것을 합리화시킬 수 있으며, 학교 자치 구조가 적절하게 조직되어 있지 않고, 학교경영 조직 구성원의 자율 결정 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¹²⁾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단위 학교 교육 자치의 필요성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교 구성원인 학생·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의 학교 운영 참여 의식을 높일 수 있고, 교원의 전문성과 구성원의 협동적 체제로 학교의 자율 역량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학교 운영과 의사 결정의 합리화

학교 운영 활동이란, 학생·교직원간의 인격적 상호작용을 근간으로 하는 교육 활동의 목표 달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행위라 할 수 있다. 바람직한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이해 당사자(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의 고른 참여에 의한 의사 결정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에서 참여의 부재는 효과적인 학교 운영의 걸림돌로 학교가 지역사회 속에서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체로 성장하지 못하게 한다.

Simon(1957)¹³⁾ 등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의사 결정은 조직을 운영하는데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다. 그러므로, 의사 결정은 교육 행정가가 수행할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과정에는 일반적으로 ①문제의 정의 ②대안의 분류 ③각 대안에 대한 결과의 예측 ④각 대안에서 최선의 대안

11) 교육개혁위원회,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제3차 공청회, 1995, p. 61.

12) 박종렬, 「교육행정의 발전과 전망」 (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편, 1995), p. 321.

13) Simon, Herbert A, Administrative Behavior. New York: Mcmillan century, 1957. p. 8.

선택으로 요약된다. 교육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로 기업 조직에서와 같이 의사 결정에 구성원의 참여의 효과를 입증한 연구들이 많다. 이처럼 의사 결정에서 참여자(교장, 교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의 역할 중에 교장의 역할을 살펴보면, 학교 운영에 대한 의사 결정은 거의 학교장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의사 결정의 공유 정도가 교장의 손에 달려 있으며, 교장이 자기의 권한을 참여자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의사 결정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단위 학교 의사 결정에서 교장은 참여자들의 교육관과 교육적 이해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해결하는 '갈등의 조정자'와 학교교육이 추구해야 할 이상과 목표를 제시하고 공유하도록 설득하는 '비전 제시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학교의 모든 운영 주체들이 의사 결정의 전 영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는 되어야겠지만, 모두 같은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치 않은 경우는 모든 구성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결정은 각 구성원의 고유한 의사 결정 영역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렇듯 각 운영 주체들의 역할에 대한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전문성이 인정되는 고유한 의사 결정은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¹⁴⁾

3) 학교운영위원회 자율성과 책무성

자율성(autonomy)이라는 개념은 학교경영의 기본적인 원리임과 동시에 학교경영에 있어서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치를 특정짓는 핵심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¹⁵⁾ 교육 자치는 단위 학교 운영에 교육부, 시·도교육청, 지역 교육청이 보다 많은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는 자율성을 의미한다. 자율성은 외부의 규제, 간섭 없이 스스로 결정, 실천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이다.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로 구성된 학교 운영 주체인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를 자율적으로 경영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교육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교육의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학교에 대한 지원 체제 확보와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핵심적으로 표방하고 있는 자율적 학교경영은 그 면모를 여러 측면에서 규정할 수 있지만, 그것은 첫째로, '학습의 측면'에서 학교 구성원들이 그 학교의 특성에 맞는 학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그럼으로써, 학생들의 자기의

14) 조수연,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1997, p. 40.

15) 정태범 외, 「학교·학급경영론」 한국교육행정학회, (서울: 하우, 1995), p. 80.

인생관과 교육관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로, 자율적인 학교경영은 해당 조직체를 운영하는 방법적 원리로서 '분권화'와 '책임화'를 의미한다.

학교경영에서의 분권화와 책임화는 곧 학교의 하위 조직체가 각각의 업무를 중앙집권적인 통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름의 권한에 따라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나가서 해당 업무에 대한 분권적 책임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학교경영의 방법적 원리로서의 분권화와 책임화는 학교 운영의 전문화를 도모하게 된다.

단위 학교 중심의 자율 경영 체제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단위 학교가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운영에 있어, 의사결정이 보다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참여를 통한 학교경영 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¹⁶⁾ 자율적 학교경영은 교육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에게 최적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그것은 결과적으로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책무성이라 하면 자신이 한 일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교육의 경우에서 책무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책임 소재를 밝히려는 것보다는 학교교육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그 달성 정도를 평가하고, 그 원인, 책임, 그리고 개선 방법 등을 규명하는데 있다.

3. 學校經營參與組織의 役割과 必要性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School-Site Management)라는 용어는 중앙집권적인 교육 방식과는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학교중심 경영제', '학교자치 관리제' 그리고 '학교 자율 경영제등' 여러 가지 용어로 지칭되며, 단위 학교에 학교 운영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보다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학교 경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¹⁷⁾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의 체계적인 의견 반영을 통해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학교교육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학교 운영을 공개함으로써 학교 운영을 민주화하는

16)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5-1, 1995, p. 11.

17)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경영 체제 개선 방안연구”, 연구보고서 94-16, 1994, pp. 39-40.

것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교교육에 대한 의견 수렴 기능의 제도적 정착을 통해 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학교 단위 책임 경영에 따른 학교장의 합리적인 권한 행사를 담보할 수 있는 견제와 균형의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였다.¹⁸⁾ 학교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계자들의 참여도를 높여 경영 합리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는 학생 생활 지도에, 교사에게는 학교 교육 계획과 학교 예산관계 수립 등에 참여 범위를 확대하고, 교내 자율 장학의 활성화를 통해 자율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1) 교사의 학교경영 참여

책임경영체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관련 집단(교직원, 학부모, 지역인사, 교육행정기관 담당자)의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의사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학교 조직의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조성해야 한다. 특히 교사의 참여는 교내 인사, 학급 담임 배정, 학교계획 수립과정, 학교예산 운용계획 수립과정, 교내 자율 장학 부분에서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¹⁹⁾

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교사의 참여는 학교경영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수단이다. 현재 각 학교에서는 교사 참여 방식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학교에 따라서 교사의 참여를 제한하고 교장 및 보직 교사 중심으로 학교가 운영되기도 하며, 학교 운영 조직(교직원회·각종 위원회 및 협의회)이 있어도 이들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예가 적지 않다.²⁰⁾ 조직에서의 의사 결정은 집단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여적 의사 결정(participatory decision making)은 의사 결정 사항에 관련되는 사람들이 결정 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집단적 의사 결정 방법이다. 참여적 의사 결정은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경영의 요건으로 한 개인이 결정하는데 부딪치는 한계를 여러 사람의 중지를 모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의사 결정 수단이다.²¹⁾

18)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자료, 열린시대·열린학교 운영”, 장학자료, 1998, p. 8.

19) 유현숙,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 그 성공 전략은 무엇인가?”, 교육월보 제159호, 1995 3월호, pp. 33-34.

20) 김운태, 정태범, 노종희, “학교경영의 민주화 및 전문화 방안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p. 9.

21)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조직론」 (서울: 도서출판 하우, 1995) p. 105.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교사의 광범한 참여를 위해서는 교장은 학교의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교사의 개인적 이해관계(관련성)와 그 의사 결정에 기여할 전문적 능력(전문성) 여하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교사를 참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²²⁾ E. M. Bridges(1967)²³⁾는 교사가 참여해야 할 결정을 알아보는 기준으로, 결정 사항에 대한 교사의 이해 및 관심의 정도에 따른 적절성 검증과 의사 결정에 교사의 기여 능력으로 참여를 판단해야 하는 전문성 검증을 제시하였다. Owens(1981)²⁴⁾는 위의 두 가지에 교사가 참여 할 수 있는 결정 권한 영역으로 관찰권 검증을 제시하였다. 즉, 교사가 적절성 검증과 전문성 검증에 비추어 참여할 수 있는 결정 사항이더라도 그것이 교사의 결정 영역 밖의 사항이면 의사 결정 참여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교사가 학교경영 참여를 통해 직무 만족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전문성)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참여 빈도를 늘려야 한다는 연구도 있다.

Hoy와 Miskel(1987)은 학교경영에 있어서 교사들의 참여가 가져오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면에서 학교 내에서 정책 결정 과정에 교사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 주는 것은 교사의 사기 진작과 학교 조직에 대한 헌신적인 태도 유발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고, 또한 학교경영에 있어서 교사들의 참여 기회 확대는 전문직으로서의 교직에 대한 만족도와 높은 상관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정적인 면에서 교사의 참여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상당수의 교사들은 모든 의사 결정에 참여하기를 기대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으며, 실제로 지나친 참여는 부정적인 결과를 수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 참여적 의사 결정이 부정적 효과를 배제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는 주의 깊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²⁵⁾

첫째, 어떤 조건하에서 교사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해야 하는가? 둘째, 어느 정도 그리고 어떻게 교사들을 참여시켜야 하는가? 셋째, 어떻게 의사 결정 집단을 구성해야 하는가? 넷째, 어떤 역할이 교장에게 가장 효과적인가?

22) 김윤태 외. 앞의책, 1991. p. 153.

23) E. M. Bridges, "A Model for Shared Decision Making in the School Principalship",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vol. 3, No. 1.(1967), p. 52

24) Robert G. Owens, Organizational Behavior in Education (2nd ed.;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Inc., 1981). p. 34.

25) W.K.Hoy & C.G Miskel,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3rd ed.; New York: Random House, 1987) p. 338.

교사의 참여 확대 방안에 대하여 각급 학교 교장·교감에게 물은 결과 교사들은 참여 의식 증대를 가장 우선적인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초·중학교 교사들은 참여 의식을, 고등학교 교사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Everard와 Morris(1973)는 참여와 책무성과의 관계를 논하면서 학교 경영에 있어서 교사의 참여 기회는 책무성에 대한 인식의 증대를 가져온다고 하였고, 참여를 통한 성취감 증대를 통해 학교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헌신하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다.²⁶⁾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교사의 의사 결정 참여는 교사 자신의 교수-학습 활동을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학교 조직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학교교육의 목표 달성에 대한 헌신적인 기여와 책무성에 대한 인식 증대, 조직에 대한 만족도 증대 등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시간 제약, 관련 업무에 대한 교사의 전문성·관심도 및 책무성의 문제 등 과업의 성격에 따라 교사의 의사 결정 참여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2)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

학교를 움직여 가는데 참여하는 다양한 세력 중에서 중요한 세력의 하나가 학부모 집단이다. 학부모는 학습 활동의 주체인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행사를 대행해야 한다는 본원적 교육권을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학교교육에 참여한다는 것은 당연한 권리요, 의무이다. 또 학부모는 미성숙한 학생의 친권자로서 자녀의 교육 문제에 관하여 자연적인 친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녀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행하기 위해서라도 학교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교육의 민주적 발전을 위해 제기되고 있는 지방 교육 자치제 이론의 제안에서도 중요한 논리 중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는 원리의 하나가 교육 활동에 대한 학부모의 교육권 행사이다. 주민 통제의 원리는 일정한 지역주민, 학부모가 교육에 있어서 의사 결정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것이다.²⁷⁾

지금까지 학부모의 학교 참여는 대체로 학교 조직 후원을 통한 학교 재정 지원, 가정학습 지도를 통한 학교교육에 대한 보조역할, 생활지도, 진로지도 등을

26) 강정숙,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 6.

27) 신호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 유형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p. 4.

위한 교사와의 공동 상담, 보조 등의 형태였다.

주삼환²⁸⁾(1988)은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가 필요한 이유를, 첫째, 학부모 참여를 통해 학교가 당면한 문제를 더 잘 이해하게 되고 학교의 프로그램 개선에 더 지원하게 되며, 둘째, 학부모 참여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데 아이디어와 전문지식, 인적 자원을 제공받게 되며, 셋째, 학부모와 시민은 학교를 보다 공정하게 평가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학부모 참여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의 인식 조사 연구에서 구자현(1990)은 첫째, 학부모가 교사에 비해 학교 참여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둘째, 학부모와 교사 모두 생활 지도와 봉사 활동 영역에서 학부모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며, 셋째, 의사소통의 주된 방법은 가정 통신문과 학부모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부모의 참여가 간접적·집단적 형태를 선호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이다. 넷째, 학부모는 학교교육 참여의 장애 요인으로 시간 부족과 학교의 일방적 전달을 들고 있는 반면, 교사는 학부모와의 인간관계를 들고 있어 두 집단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다섯째, 앞으로 교육 자치제 실시에 따라 학부모 참여가 권장되어야 하며, 학부모의 불참여가 교육권의 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²⁹⁾ 주장했다.

김유중(1990)은 그의 연구에서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의사와 실제 참여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참여 의사는 매우 높고, 실제 참여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기회 부족' 등으로 나타났는데 학부모들은 학부모 참여가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³⁰⁾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도가 낮은 것은 참여의 기회가 적거나, 교육에 관한 의견 교환의 통로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학교 운영을 개방적으로 하고 학부모에게 참여의 기회를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³¹⁾

앞으로 학부모 학교교육 참여가 활성화되고 교육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기

28) 주삼환, 「장학 교장론 특강」 (서울: 성원사, 1988), p. 266.

29) 구자현,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pp. 86-89.

30) 김유중,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pp. 62-63.

31) 이공숙,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pp. 58-59.

위해서는 학부모 조직 단체가 재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교육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학교교육을 후원하고, 학생 복지와 선도를 위한 사회 활동을 전개하며, 자녀교육을 위한 교육상담과 회원의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며, 학교교육과 학교 행정에 대하여 요구하고 협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32)

이상의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학부모의 학교경영 참여는, 첫째, 학교 운영위원회 제도 중 불합리한 문제점은 제도적으로 개선하여 학교경영에 관한 모든 처리를 민주적이며 합리적으로 되어야 하고, 둘째, 교사의 전문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부모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제도적 기구를 통하여 학부모 위원들이 다양한 교육 참여 요구를 학교경영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가지고 학교경영 정책 결정에 분권화·전문화·민주화를 확보하여 학교경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사회 인사의 학교경영 참여.

학교교육에서 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지역사회의 참여를 통해 학생의 성취를 증대시켜 학교교육의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과거에는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학교에서 교육계획 수립이나 교육활동에 지역사회에서 참여할 기회는 물론, 자신들의 이해와 직결된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교육 문제라는 것은 교육에 관련된 집단들이 합리적이며 주체적인 결정을 함께 내려야 할만큼 다면적이고 복합적이다. 교육 문제에 관련자들을 포함시키게 되면 참여 관련자들은 참여의 효과를 깨닫게 되어 다른 더 큰 문제에도 참여하고자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지역사회 인사를 참여시키는 것은 교육 자치를 실현시키는 길도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교육 활동에 참여는 지역사회의 봉사 정신을 발휘하고 지역 주민은 개별적으로 교육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면 학교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겠다. 흔히, 학교에서 생기는 문제의 원인을 학교

32) 홍기성,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방안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p. 97.

는 가정에, 가정은 학교에 돌리려고 한다. 그러나 교육에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점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교육에 대한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교육에 반영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봉사를 유도하고 이를 강화하면 민주주의 훈련장으로써의 역할과 또한, 교육의 효과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사회 주민의 행정 참여를 보통 주민 참여라 한다. 주민 참여는 매우 다의적인 개념이다. 지금까지 여러 입장과 측면에서 주민 참여의 정의가 시도되어 왔는바, 이들을 정리하여 보면,

첫째, 종래 정치·행정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소수 집단 및 일반 주민 등을 행정 과정에서 참여시키고자 하는, 즉, 공평성(impartiality) 증진의 관점이다. 이는 참여의 주체에 초점을 두고 주민 참여를 규정한 것이다.

둘째, 정책 결정 및 집행의 모든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access)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관점이다. 이는 참여의 대상에 초점을 둔 주민 참여의 정의이다.

셋째, 주민 운동의 진전에 따라 정부에 대응성(responsiveness)을 요구하는 관점이다. 이상과 같이 참여의 주체, 대상 및 영향에 초점을 둔 주민 참여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인사의 학교경영 참여로 정의 내릴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주민 참여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공식적인 의사 결정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주민이 그 결정 및 집행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련의 행동'으로 정의 할 수 있겠다.³³⁾

주민 참여는 다수의 참여로 인하여 효율성과 운영적인 측면으로 일선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정적인 시각을 보일 수 있다.

이에, 주민 참여의 가치와 함께 많은 난점도 도출되고 있어 W. R. Derrick와 J. T. Coppock(1977)³⁴⁾는 일반적으로 주민 참여의 가치를 관념적인 측면과 실용적인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 관념적인 측면은 민주 사회에서 모든 개인은 자기의 견해를 알리고 협조 받으며 표현할 권리를 갖는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신념의 바탕 위에 놓여 있으며, 실용적인 측면은 개인의 의견을 충분히 표출 전달하여 시책이나 교육계획 등에 반영토록 한다는 정책 결정 과정의 불완

33) 최창호, 앞의 책, 1997, pp. 643-644.

34) W.R. Derrick and J.T. Coppock, Public Participation in Planning (London: John Wiley & Sons, 1977), p. 28.

전성의 극복에 바탕을 두고 있다.

지역 주민들의 교육행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참여의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Robert A. Aleshire(1978)는 주민의 참여가 교육행정의 계획 및 실천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하였다. 첫째, 시간과 돈이 많이 들게 된다. 둘째,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장 좋은 조건하에서도 참여 및 개입을 회피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은 참여에 그들 자신이 영향을 받지 않는 한 공공 문제에 참여하기를 싫어한다.

또한, 임성한(1986)은 주민 참여가 다른 행정권에 포섭될 가능성을 우려하여, 특히 개발 도상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의 정당화를 위한 동원으로 주민 참여를 조작하고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는 교육의 전문성이라는 이유로 주민의 의사를 수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³⁵⁾

이에 R. C. Martin(1978)³⁶⁾이 효과적인 주민 참여를 위하여 과제를 제기 하고 있다. 첫째, 주민 참여에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둘째, 효과적인 주민 참여는 중앙으로부터 내려오는 하향적 참여를 타파하고 주민 의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주민 참여가 제도화될 경우 오히려 역동성을 잃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반감시켜 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한, 하향적 참여에서도 주민 참여가 지역의 유공자 내지는 일부 활동가에서만 한정되어 주민 사회의 저변까지 파급되지 않는 현상을 막아야 하는 어려움이 남는다.

이상에서 살핀 것과 같이 교육기관의 어느 단위에서나 ①시간과 금전의 낭비 ②능률의 저해 ③교권 침해 우려 등의 역기능을 초래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역기능들이 주민 참여 자체에서 오는 폐해가 아니고, 운영의 미비에서 오는 것인 만큼 교육의 수혜자로서 교육의 욕구 충족, 민주성의 확보, 의견의 합의로 오히려 실천 요구를 함양시켜 나가야 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주민 참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참여 격차의 현상을 타개하고, 전 부문 전 계층의 참여로서 전 주민의 창의력과 에너지를 결집할 것이 요구된다. 이에 주민 참여의 효율적 운영과 증대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학교는 민주 사회에서 공적인 성격을 띤 교육기관이다. 학교에 속해 있는 지역사회나 주민과의 연대나

35) 임성한, 「관료제와 민주주의」 (서울: 법문사, 1986), p. 374.

36) R.C. Martin, Grass-Root Democracy (New York : Albama University Press, 1978), pp. 17-18.

협동은 그 경영에 있어 필수적으로 제기되는 본질적인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할 책무가 있고, 아울러 지역사회도 학교교육에 대한 책임이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학교-지역 주민의 관계는 학교경영에 참여를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³⁷⁾

Leslie W. Kindred(1987)³⁸⁾는 이러한 학교와 주민과의 관계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할 방향을 언급하고 있다. 종전에는 학교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만 일방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알려 지원 받고자 하였던 관계에서, 이제는 지역 주민들의 학교에 바라는 사항을 이해하고 상호 협조 관계를 중심으로 학교와 공공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는 학교에서 지역 주민들의 학교 교육 의사 결정 과정에 보다 많은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와 지역사회 관계를 보다 밀접한 관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이상에서와 같이, 지역 주민과 학교가 상호의존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제도화되어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지역사회 인사들의 학교경영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第2節 우리 나라의 學校運營委員會 制度

1. 設置背景 및 基本趣旨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1995년 5월31일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일련의 교육 개혁 조치들 중에서 특히, 교육 수요자를 비롯한 학교 공동체 구성원이 정례적으로 학교 운영에 참여하여 이들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 결정에 학부모·교원·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 의사 결정 기구이다.³⁹⁾

37) 권이중, 「사회교육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0), pp. 439-440.

38) Leslie W. Kindred, The School and Community Relations (New Jersey: Prentice-Hall, 1987), pp. 126-127.

39)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서울:교육부 1996), p. 9.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의 의견을 바로 학교교육에 반영하고 또한 단위 학교가 자발적으로 개혁을 추진 할 수 있게 위임하려는 장치이다. 즉, 학교장과 교사가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의 의사를 학교 운영에 반영하여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함께 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⁴⁰⁾ 이처럼 현재 우리의 학교 행정과 운영에 획기적인 방향 전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배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교원·학부모·지역 인사가 참여하여 학교 공동체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 동안 학교 운영에 대한 책임을 교육행정 기관이나 학교 장에게만 있다고 생각해 온 경향이 있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교라는 공동체의 당사자인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가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학교 발전을 위해서는 학교장은 학교 운영의 총책임자로서 미래 지향적이고 탁월한 리더십을 행사해야 하며, 교사는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입장에서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교육자로서 그 소임을 다해야 하고, 학부모는 자신의 자녀만이 아닌 우리 자녀의 교육권을 올바르게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역사회 인사는 지역사회의 변화와 요구를 교육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보다 발전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것이고, 학교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각 부분은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는 급변하는 사회·문화·경제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회의 여타 조직에서는 운영의 자율화·다양화·전문화가 상당히 진전되고 있으나 학교는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또한, 사회 전반에 참여를 통한 민주적 조직 운영의 분위기에서 고조되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아직도 타율적인 조직 분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통해 21세기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의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위에서 언급한 외에도 지역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산 교육장이며, 2000. 1. 2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⁴¹⁾

40) 교육개혁위원회, 앞의책, 1995, p. 43.

41)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6,216호, 2000. 1.28 개정) : 제62조(선거인단의 구성등) ①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단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초·중등교육법 제31조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하“학교운영위원회선거인”이라한다)으로 구성한다 ②선거일 현재 교육위원 또는 교육감의 선거인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다.

개정으로 앞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교육감, 교육위원 선거인단으로 지방교육자치기관 구성원 선출에 참여하게 되어 학교 자치를 기반으로 한 교육 자치를 이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이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1995년 5월 31일 교육 개혁 방안 가운데 교육 자치의 핵심으로 부각되어 큰 호응을 보인 제도로서, 학교 단위의 교육 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그 근본 취지로 삼고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의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에서 제시하는 신교육 체제의 비전과 목표를 살펴봄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태동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5. 31.교육 개혁 방안 가운데 초·중등교육 단계에서 좋은 『우리 학교』 공동체 만들기는 이제까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이 부족하고 학부모의 학교 운영에의 참여가 미흡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던 실정에서, 교육의 주민자치 정신을 구현하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학교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교직원,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자발적으로 책임지고 학교를 운영하는 『학교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⁴²⁾는 필요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개혁위원회에서는 기존의 학교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도록 교육 개혁을 추진해 왔으며, 학교운영위원회는 종전과 다른 학교 운영 방식을 통하여 학교마다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와 더불어 초·중등학교의 변화와 혁신은 차츰 가시화 되어 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의 설치 근거가 1995년 7월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있었으나, 교육법 체제의 전면 개편으로 『초·중등교육법(법률제5,438호. '97. 12. 31)』에 설치 근거를 담게 되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 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배경에서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교육 자치의 근본 취지인 분권화·전문화·민주화에 합당한 제도이다.

42) 교육개혁위원회, 앞의책, 1995, pp. 9-13.

〈표2-2〉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의 차이점

구 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설치근거	초·중등교육법	학부모회 규약
성 격	심의 기 구	의결 및 집행기구
조직권한	중요한 학교운영사항 심의	학부모 활동에 관한 사항
구 성 원	학부모대표, 교원대표 지역대표	학 부 모
목 적	학교운영에 필요한 정책결정의 민주성, 투명성, 타당성 제고	학교교육활동을 위한 지원활동, 상호친목 도모

출처: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1998, p. 6.

2. 構成 · 機能 · 運營 制度

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 정수 및 구성 비율

학교운영위원회는 당해 학교의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교육행정기관의 인사, 교육전문가, 동문대표, 기업인 등)의 고른 참여로 구성하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664호, '98. 2. 24) 제58조에 되어 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7인-15인⁴³⁾의 범위 안에서 학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며, 일반계 학교는 학부모위원 100분의 40 내지 100분의 50, 교원위원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지역위원 100분의 10 내지 100분의 30의 구성 비율이 유지되어야 하며, 실업계고등학교는 학부모위원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40, 교원위원 100분의 20 내지 100분의 30, 지역위원 100분의 30 내지 100분의 50의 구성 비율이 되도록 하고 있으며, 실업계

43) 초·중등교육법(법률 제6007호, 99. 8.31. 2000. 3.1시행)개정되었음, 제31조 3항: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정수는 5인이상 15인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25호, 2000. 2. 28 공포)제58조①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범위 안에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1. 학생수가 200명 미만인 학교: 5인이상 8인 이내. 2. 학생수가 20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학교: 9인 이상 12이내. 3. 학생수가 1천명 이상인 학교: 13인 이상 15인 이내.

학교의 지역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사업자이어야 한다 또한 학생수가 60명 미만인 소규모 학교⁴⁴⁾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 및 위원 구성 비율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였다.

〈표2-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위원 수	일반 학교	실업계고등학교	학생수 60명 미만 학교
7인이상 15인 이내	학부모위원:40-50% 교원위원(학교장포함):30-40% 지역위원:10-30%	학부모위원:30-40% 교원위원:20-30% 지역위원:30-50%	위원정수 및 구성 비율은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학교 운영위원 선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목적은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단위 학교 중심의 자율 경영 체제를 구축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이 누구에 의해, 어떠한 방법으로 선출되느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성패를 좌우하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을 선출하는데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인사가 선출 되도록 하는 것이다. 위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참여 기회를 극대화하고, 선거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선출 과정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준수하며, 학교와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1) 공정한 선출 관리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조례 및 각급 학교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근거로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선출을 모두 관리할 수 있는 기구로 구성하던가 아니면, 학부모위원 선출과 교원위원 선출을 분리하여 선출 위원회를 각각 구성하는 방안이 있다.

(2) 교원위원의 선출은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교원 전체 회의가 추천한 교원으로 교원선출 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선거관리 위원은 교원위원의 선거권은 있으나 피선거권은 없다.

44) 초·중등교육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25호, 2000. 2. 28 공포)제58조제1항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조항 삭제됨.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 회의에서 교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한다.

(3)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민주적 대의 절차는 다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으나, 충분한 홍보를 통하여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며, 선출 절차가 합리적이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학부모 위원의 선출 유형은 직접 선거(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선 하는 경우, 서신 또는 우편 투표와 직접 투표를 병행하는 경우)와 간접선거(대의원에 의한 선출)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단위 학교는 학교의 사정과 학부모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례와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의 범위 안에서 타당한 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4)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지역위원의 구체적인 선출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서 반드시 정할 필요는 없으나,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협의하여 선출 절차를 정하게 된다. 지역위원을 선출함에 있어서는 지역위원의 추천권을 누구에게 줄 것이며, 지역위원이 갖추어야 할 자격은 무엇인가, 본인의 희망 여부를 참작함이 없이 선출이 가능한가 등이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다.

(5)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각 1인씩 두게 되어 있으며,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 결정에 교원·학부모·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 합리성, 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 의사 결정 기구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⁴⁵⁾

첫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정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고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반듯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⁴⁶⁾하는 기구이다.

45) 교육부, 앞의 책, 1996, p. 9.

46) 교육부, 앞의 책, 1998, p. 130.: (초·중등 교육법 제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

셋째, 학교운영위원회는 '독립된 위원회'이다. 학교장은 당연직 위원이지만 학교 운영위원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이므로, 학교운영위원회는 법적 성격상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이다.

초·중등교육법 및 제주도조례 규정에 의거 국·공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 규정된 심의 사항은,⁴⁷⁾

- ① 학교 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②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 ③ 학교교육 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
- ④ 교과용 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 ⑤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 기간 중의 교육 활동 및 수련 활동에 관한 사항.
- ⑥ 교육공무원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 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⑦ 학교운영지원비와 학교 발전 기금의 조성·운영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⑧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⑨ 학교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⑩ 기타 대통령령, 특별시, 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주도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주도조례 제2133호 98. 5. 29) 제9조 심의 사항은,

- ①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 ②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학생 수련, 야영 활동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다만, 특정서클 등에서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

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0조제1항은 재심의 절차대신 학교장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 보고하게 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닌 심의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심의결과는 기관의 장을 구속하지 않는 반면 의결결과는 기관장을 구속한다. 그러나 법규에서 의사결정을 하기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 그 결과의 구속여부와 무관하게 사전 심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한다.

47) 초·중등교육법(법률 제6007호, 99. 8.31. 개정, 2000. 3.1.시행) 제32조(기능) 9.대학입학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됨>

은 제외한다.

- ③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 ④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에 관한 사항.
- ⑤ 학부모·학생·지역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학교 운영 등과 관련된 청원 사항.
- ⑥ 기타 학교 운영에 관한 위원들의 제안 사항과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3)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가) 회의소집 및 회의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는 매 학기 개최되는 정기 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되는 임시 회의로 운영하고, 회기(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사안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그 활동 상황을 전체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학교 운영에 반영 또는 처리된 결과를 차기 회의에서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매 학년도 말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보고서의 형태로 발간하여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 기록 등 사무 처리를 위하여 서무 책임자를 당연직 간사로 하되, 서무 책임자가 없는 학교는 학교장 추천으로 교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 기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교원·학부모·지역 주민 등의 요청 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시 회의 소집은 학교장 또는 일정수 이상(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사무 처리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개최 최소한 7일전에 각 위원에게 안건을 첨부하여 개별 통보하여야 한다. 회의의 유형으로는 학교운영위원회 본회의, 소위원회, 공청회 등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나) 회의 원칙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회의 절차의 일반적인 원칙으로는 발언 자유의 원칙, 회의 공개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회기 계속의 원칙, 일사부재의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족수의 원리로는 의사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적용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일반 안건의 의결 정족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일반 정족수를 택하고 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다) 학교운영위원의 임무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 위원장으로 선출된 자는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총괄, 심의 의결된 사항을 학교장에게 이송,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는 안건이 접수되었을 경우, 임시회 소집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고, 임시회의 의사일정 작성, 소위원회 구성 여부 결정, 휴회 중 위원의 사직원 제출시 이의 허가, 학교운영위원회의 각종 문서에 대한 서명 등을 하여야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하며, 위원장이 회의 진행 중 토론에 참가할 때는 위원장을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시켜야 한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며 운영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이송된 사항을 집행할 의무가 있고, 기타 학교 운영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한다.

일반 위원은 안건을 발의하며,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고, 회의 진행 중 회의 진행 규칙을 준수하여 원만한 회의가 진행되도록 협조하며, 관계 교직원 등이 출석요구 및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활동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비에 한해 지급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자체 운영 경비는 학교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원은 회의 출석을 성실히 하여야 한다. 회의 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이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시에는 위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어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은 학교운영위원회의에서 학부모 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간사는 각급 학교 서무부장들이 담당하고 있다.

第3節 分析의 틀

1. 分析 틀의 構成 및 要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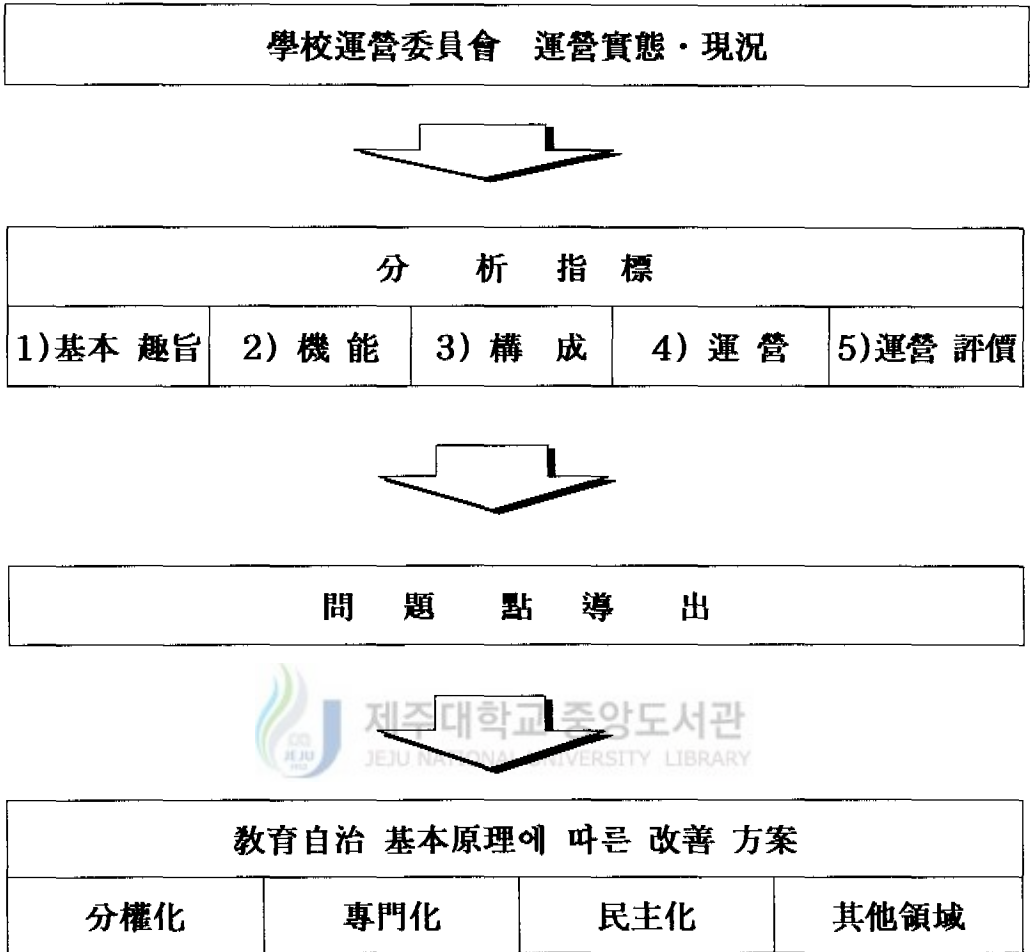
1) 분석 틀의 구성

교육기본법에서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을 보장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위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학교 운영이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 주민 등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교 운영에 참여 할 수 있다’ (제5조①②항)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과 지방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설치와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규정하고 있다(제1조). 이러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가 있는 것이다.

교육 자치제 아래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원리는 교육 자치제의 원리와 학교경영을 위한 일반적 원리들을 같이 고려한 기본 전제하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 자치제와 학교운영위원회 성격과 내용은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앙과 지방을 막론하고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중립성·민주성 및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을 보장한다고 해석되는 바, 이는 교육 자치가 지방 수준에 있어서는 특히 더 보장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다. 학교 단위 교육 자치로서 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 운영과 관련된 주요한 의사 결정에 학부모·교원·지역 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여 학교 교육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 의사 결정 기구이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춘 제도로 학교운영위원회는 종전과 다른 학교 운영 방식을 통하여 학교마다의 특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교육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제고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를 위해서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교육 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기 위하여 분석 지표를 학교운영위원회 기본취지, 기능, 구성, 운영, 운영 평가에 대한 실태 분석과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교육 자치 기본 원리에 따른 분권화·전문화·민주화 영역으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1〉 研究 分析의 틀 圖解



2) 분석 요소

(1)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정착이 되면 학교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학교경영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이 기본 취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학교운영위원회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에서는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에 대한 인식 조사. 둘째, 위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를 받은 회수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제32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등)에 의거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선정,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 활동, 기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련한 여러 가지 심의 기능 항목별 필요성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에 의거 국·공립의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운영위원은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①어떤 인사가 운영위원으로 선출되었는지 ②위원 선출 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각 학교에서 1년('99. 3.-2000. 2 현재)동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 회의개최 횟수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 소위원회 활동 사항,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 반영 실태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위원별 영향력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평가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가 활성화가 되었는지' 여부 등 운영 결과에 대하여 위원회에 참여하였던 구성원들의 운영 성과에 따른 만족도가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가능성을 측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운영 결과 구체적인 항목별 평가와 학교운영위원회 기구의 필요성 인식도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6)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과 의사 결정 등에 교원·학부모·지역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것은 교육 자치 원리라는 큰 틀 속에서 시행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 실현에 초점을 두고 분권화·전문화·민주화의 원리와 기타 영역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2. 調査 設計 및 內容

1) 조사 설계

본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현황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인 분권화·전문화·민주화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 자치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전문 서적과 선행 연구 등을 참고하고 본 연구자가 일선 학교 근무시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지 초안을 만들어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교육연구사 및 교사들과 1차 토론 과정을 거쳐 제작하였다. 질문지 제작 후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예비 조사를 실시하여 질문지를 수정, 보완하였다. 질문지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 실태 현황과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으로 교육자치의 기본 원리에 따른 분권화·전문화·민주화·기타 영역으로 구분하여 총 2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연구의 대상 및 표집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대한 실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2000년 2월1일부터 2000년 2월29일까지 각급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의 협조를 얻어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내 지역별·학교급별로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소재한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1999학년도에 실제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였던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하여, 95개교1,182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여 66개교 632부를 회수(회수율 53.5%)하였고 회수된 질문지 632부 가운데 불성실하게 응답한 21부는 제외하고 611부 응답한 결과를,

첫째, 지역별인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4개 집단으로,

둘째, 학교급별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3개 집단으로,

셋째, 운영위원별인 교원위원,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결과의 분석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적절한 기법으로 전반적인 반응 결과를 분석하고자 백분율(Percentile)과, 집단간의 카이사승 검정(Chi-Square Test)⁴⁸⁾을 적용하였다.

48) 정충영 외, 「SPSS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1997), p. 122.

〈표2-4〉

응답 대상자의 특성별 구성 현황

변 수 명		빈도(명)	비율(%)
성별	남성	442	72.3
	여성	169	27.7
	계	611	100
연령	30대 이하	87	14.2
	40대	278	45.5
	50대	210	34.4
	60대	36	5.9
	계	611	100
지역별	제주시(18개교)	187	30.6
	서귀포시(13개교)	132	21.6
	북제주군(16개교)	130	21.3
	남제주군(19개교)	162	26.5
	계(66개교)	611	100
학교급별	초등학교(27개교)	250	40.9
	중학교(24개교)	211	34.5
	고등학교(15개교)	150	24.6
	계(66개교)	611	100
운영위원별	교원위원 (66개교)	250	40.9
	학부모위원(66개교)	254	41.6
	지역위원 (66개교)	107	17.5
	계	611	100

<표2-5>

설문지의 문항 구성

내 용 구 분	영역구분	문항수	내 용 요 약	문항 번호
학교 운영 위 원회 운영 실태 현황 조사	○ 일반사항	5	① 성별 ② 나이 ③ 학교지역 ④ 학교별 ⑤ 위원별	1-5
	○ 학교운영위원회 기본취지	2 (①-⑥)	① 학교운영위원회 기본취지 인식도 ② 위원 전문성연수 이수현황	1 (①-⑥) 2
	○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1 (①-⑪)	③ 학교운영위원회 법정 심의항목에 대한 필요성	3 (①-⑪)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4	④ 지역위원 선출인사 ⑤ 학부모위원 선출인사 ⑥ 교원위원 선출인사 ⑦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	4 5 6 7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5	⑧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 회수 ⑨ 운영과정상에 문제점 ⑩ 소위원회 활동사항 ⑪ 학생의사 반영 여부 ⑫ 운영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별 영향	8 9 10 11 12
	○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평가	3 (①-⑨)	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평가 ⑭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성과 평가 ⑮ 학교운영위원회 기구의 필요성	13 (①-⑨) 14 15
	학교 운영 위 원회 개선 방안 요구 자료	분 권 화	5	⑯ 위원장 선출 자격 대상 위원 ⑰ 학교운영위원회 기구 성격 ⑱ 학생의사 참여 방안 ⑲ 소위원회 활동 전망 ⑳ 법정 위원수에 대한 견해
전 문 화		3	㉑ 전문성 있는 심의 방안 ㉒ 위원 연수 의무화 방안 ㉓ 위원 연수의 프로그램 운영방안	21 22 23
민 주 화		3	㉔ 학교장, 위원회 구성원에서 제외방안 ㉕ 학부모회, 교직원회의 안전발의 방안 ㉖ 연간 회의개최 최소횟수 의무화방안	24 25 26
기타영역		2	㉗ 교육자치제 실현방안 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선결 방안 ㉙ 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위원 역할	27 28 29

第 Ⅲ 章 濟州道 初·中·高等學校 運營委員會 構成 現況 分析

第1節 濟州道內 學校運營委員會 構成 過程

- 1995년 9. 1 학교운영위원회 시범 운영 실시
초등학교 2개교(남광교, 효돈교)
중학교 2개교(중앙중, 세화중)
고등학교 2개교(제주일고, 제주여상고)
- 1996. 5. 15 제주도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관한조례(제주도조례 제2011호)제정
- 1996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초. 32 개교, 중. 14 개교 고. 9 개교 (계. 55개교)
- 1997학년도 학교운영위원회 확대 실시 구성
초등학교 44개교, 중학교14개교, 고등학교 9개교, 특수학교 1개교 (계. 68개교) 구성
『초등학교 (76개교), 중학교 (28개교), 고등학교(18개교), 특수학교(1개교)』 (계. 123개교)
- 1998. 5. 20 제주도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주도조례 제2133호)개정
『60명 미만 소규모 학교에 설치토록 함』
- 1998. 5. 국·공립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완료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6개교. (계. 36개교)
『초등학교 (106개교), 중학교 (34개교), 고등학교 (18개교), 특수학교(1개교)』 (계. 159개교)
- 1998. 6. 사립학교 3개교(고산상고, 귀일중, 고산중) 구성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1개교 (계. 3개교)
『초등학교 (106개교), 중학교 (36개교), 고등학교(19개교), 특수학교(1개교)』 (계. 162개교)
- 1998. 9. 사립학교 3개교(삼성여고, 남녕고, 학교 규칙으로 구성 시범적 운영교: 영송학교 포함)구성
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 (계. 3개교)
『초등학교 (106개교), 중학교 (36개교), 고등학교(21개교), 특수학교(2개교)』 (계. 165개교)
- 1999학년도 6. 25 현재, 제주과학고 사립학교(학교 규칙으로 구성 시범적 운영교: 오현중, 오현고 포함) 구성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2개교 (계. 3개교)
『초등학교 (106개교), 중학교(37개교), 고등학교(23개교), 특수학교(2개교)』 (계. 168개교)

第2節 '99學年度 學校運營委員會 構成 現況 (1999. 6. 25 現在)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제주도내 국·공립학교 사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내 초·중·고·특수학교수 178개교 중, 국·공립학교(160개교)에는 모두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사립학교(전체학교18개교)는, 초·중등교육법 [舊法 법률 제5437호(1997. 12. 31.)] 제31조2항 규정에 의하여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강제 규정이 아니라 설치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권장 사항인 임의 규정이므로 사립학교(학교 규칙으로 구성 시범적 운영학교 포함)는 중학교 7개교 중 3개교(42.8%), 고등학교 10개교 중 4개교(40%), 특수학교 1개교 중 1개교(100%)가 구성 운영되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⁴⁹⁾(법률 제6,007호 1999. 8. 31)이 개정되어 2000. 3.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사립학교에서도 2000. 3월부터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가 됨에 따라 도내 전 학교(사립학교 포함)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운영이 예상되므로 모든 학교에서 교육 자치의 실현이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3-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현황

구 분	국·공립					사 립					계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초	중	고	특수	계
학 교 수	106	34	19	1	160		7	10	1	18	106	41	29	2	178
구성학교수	106	34	19	1	160		3(1)	4(1)	1(1)	8(3)	106	37(1)	23(1)	2(1)	168(3)
구성 비율	100	100	100	100	100		42.8	40	100	44.4	100	90.3	79.3	100	94.4

※ ()은 학교 규칙으로 구성된 시범적 운영학교(영송교, 오현중, 오현교)이며 본 숫자에 포함됨.

49) 초·중등교육법(법률 제6007호 99. 8. 31. 개정 2000. 3. 1. 시행)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 설치) ①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공립 및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제34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②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기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위원 정수별 학교수 및 위원별 위원의 수 현황

제주도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 168개교(초106개교, 중37개교, 고23개교, 특수학교 2개교)중 위원정수 현황은 위원 15명인 학교가 54개교(32.1%), 위원 10명인 학교가 32개교(19.1%), 위원13명인 학교가 22개교(13.1%), 위원 12명인 학교가 19개교(11.3%), 위원 11명인 학교가 12개교(7%), 위원 14명인 학교가 10개교(6%), 위원 9명인 학교가 10개교(6%), 위원 8명인 학교가 9개교(5.4%)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3-2〉 위원 정수별 학교수

구 분	7명이하	8명	9명	10명	11명	12명	13명	14명	15명	계
초등학교		6	6	17	4	11	12	9	41	106
중 학교		3	1	12	4	5	4	1	7	37
고등학교			3	3	4	3	5		5	23
특수학교							1		1	2
계		9	10	32	12	19	22	10	54	168

제주도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학교 위원별 위원의 수는, 전체 운영위원 2,077명 중 학부모 위원이 937명(45.1%), 교원위원 755명(36.4%), 지역위원이 385명(18.5%)순으로 구성되었다.

〈표3-3〉 위원별 위원의 수 ()은 여성 위원수임

구 분	학부모 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	계
초등학교	610(214)	489(144)	246(12)	1,345(370)
중 학교	197(65)	160(28)	71(4)	428(97)
고등학교	118(31)	96(5)	62(5)	276(41)
특수학교	12(6)	10(4)	6(1)	28(11)
계	937(316)	755(181)	385(22)	2,077(519)

3) 위원의 연령별 분포

위원의 연령별 분포는 운영위원회 전체 위원 수 2,077명 중, 40대 위원이 863명(41.55%), 30대 위원이 548명(26.38%), 50대 위원이 471명(22.68%), 60대 이상 위원이 176명(8.48%), 20대 위원이 19명(0.91%)순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여성위원별 연령 분포는 전체적으로 여성 위원수 519명중 30대 위원이 246명(47.4%), 40대 위원이 208명(40%), 50대 위원이 48명(9.2%), 20대 위원이 15명(3%), 60대이상 위원이 2명(0.4%)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30-40대가 87.4%을 차지하고 있다.

〈표3-4〉 위원의 연령별 분포 ()은 여성 위원임

구 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이상	계
초등학교	교원위원	17(13)	59(46)	138(55)	206(30)	69	489(144)
	학부모위원	2(2)	382(162)	223(49)	2(1)	1	610(214)
	지역 위원		33(6)	109(4)	86(2)	18	246(12)
	계	19(15)	474(214)	470(108)	294(33)	88	1,345(370)
중 학교	교원위원		12(5)	56(13)	45(9)	47(1)	160(28)
	학부모위원		30(13)	154(52)	13		197(65)
	지역 위원		3	27(2)	32(2)	9	71(4)
	계		45(18)	237(67)	90(11)	56(1)	428(97)
고등학교	교원위원		2(1)	29(2)	41(1)	24(1)	96(5)
	학부모위원		8(5)	92(25)	18(1)		118(31)
	지역 위원		6(2)	25(2)	24(1)	7	62(5)
	계		16(8)	146(29)	83(3)	31(1)	276(41)
특수학교	교원위원		6(3)	2(1)	2		10(4)
	학부모위원		6(3)	6(3)			12(6)
	지역 위원		1	2	2(1)	1	6(1)
	계		13(6)	10(4)	4(1)	1	28(11)
합 계	교원위원	17(13)	79(55)	225(71)	294(40)	140(2)	755(181)
	학부모위원	2(2)	426(183)	475(129)	33(2)	1	937(316)
	지역 위원		43(8)	163(8)	144(6)	35	385(22)
	계	19(15)	548(246)	863(208)	471(48)	176(2)	2,077(519)
비 율		0.91	26.38	41.55	22.68	8.48	100

4) 위원의 성별 분포

위원의 성별 분포는 전체 운영 위원수 2,077명 중, 남성 위원이 1,558명(75%), 여성위원 519명(25%)으로 구성되어 있어, 과거에는 학부모회·육성회

등에서 어머니인 여성 참여율이 높았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남성 참여율이 높아 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 위원이 비율은 전체 30%에 못 미치고 있다.

전체위원 중 여성 위원 참여율은 초등학교 27.5%, 중학교 22.6%, 고등학교 14.8%순으로 상급학교로 갈수록 여성위원 참여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3-5〉 위원의 성별 분포

구	분	남	여	계
초등학교	교원 위원	345	144	489
	학부모위원	396	214	610
	지역 위원	234	12	246
	계	975	370	1,345
중 학교	교원 위원	132	28	160
	학부모위원	132	65	197
	지역 위원	67	4	71
	계	331	97	428
고등학교	교원 위원	91	5	96
	학부모위원	87	31	118
	지역 위원	57	5	62
	계	235	41	276
특수학교	교원 위원	6	4	10
	학부모위원	6	6	12
	지역 위원	5	1	6
	계	17	11	28
합 계	교원 위원	574	181	755
	학부모위원	621	316	937
	지역 위원	363	22	385
	계	1,558	519	2,077
비 율		75	25	100

5) 학부모·지역위원의 직업별 분포

학부모·지역위원 1,322명중, 직업 분포는 농·어업 종사자가 434명 (32.93%), 자영업 428명(32.32%), 주부 196명(14.80%), 기타직업 128명 (9.67%), 회사원 87명(6.57%), 공무원 49명(3.7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6〉

학부모·지역위원의 직업별 분포

구 분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	주 부	농·어업	기 타	계
초등학교	학부모위원	9	43	179	116	227	36	610
	지역 위원	14	13	69	10	104	36	246
	계	23	56	248	126	331	72	856
중 학 교	학부모위원	5	9	74	36	56	17	197
	지역 위원	8	3	19	2	21	18	71
	계	13	12	93	38	77	35	268
고등학교	학부모위원	3	10	59	19	19	8	118
	지역 위원	9	8	22	6	7	10	62
	계	12	18	81	25	26	18	180
특수학교	학부모위원	1	4	6			1	12
	지역 위원	1	1	2	1		2	6
	계	1	1	6	7		3	18
합 계	학부모위원	18	62	316	177	302	62	937
	지역 위원	31	25	112	19	132	66	385
	계	49	87	428	196	434	128	1,322
비 율		3.71	6.57	32.32	14.80	32.93	9.67	100

6)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분포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씩 두게 되어 있으며,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 중에서 선출된 분포는 전체 168명 위원장 중에 학부모 위원이 137명(81.54%), 지역위원 31명(18.46%)이 위원장으로, 부위원장은 학부모위원이 147명(87.5%), 지역위원 21명(12.5%)이 선출되어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3-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분포

구분	위원장			부위원장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계	학부모위원	지역위원	계
초등학교	86	20	106	91	15	106
중 학교	32	5	37	35	2	37
고등학교	18	5	23	20	3	23
특수학교	1	1	2	1	1	2
계	137	31	168	147	21	168
비율(%)	81.54	18.46	100	87.5	12.5	100

7) 교원위원 교육경력별·직급별 분포

교원위원의 선출은 선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교원위원 선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교원 전체 회의에서 추천된 교원으로 교원위원 선출관리위원회가 구성되고, 이에 따라 당연직 교원위원인 학교장을 제외한 나머지 교원위원은 교원 전체 회의에서 교원들의 직접 투표에 의해 선출된다. 교원위원으로 선출된 위원들의 교육경력별 분포는 전체 교원위원 755명 중 30년 이상 경력자 317명(42.00%), 25-30년 미만 경력자 150명(19.87%), 20-25년 미만 경력자 139명(18.41%), 15-20년 미만 경력자 78명(10.33%), 10-15년 미만 경력자 28명(3.71%), 5-10년 미만 경력자 32명(4.23%), 5년 미만 경력자 11명(1.45%)순으로 교원위원은 교육경력이 많은 교사들이 선출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표3-8>

교육 경력별

구 분	5년미만	5~10 년미만	10~15 년미만	15~20 년미만	20~25 년미만	25~30 년미만	30년이 상	계
초등학교	11	22	15	37	76	100	228	489
중 학교		6	7	29	31	29	58	160
고등학교		1	2	12	31	21	29	96
특수학교		3	4		1		2	10
계	11	32	28	78	139	150	317	755
비율(%)	1.45	4.23	3.71	10.33	18.41	19.87	42.00	100

교원위원의 직급별 분포는 전체 755명 중 보직 교사가 305명(40.40%), 평교사 192명(25.43%), 당연직인 학교장이 168명(22.25%), 교감 90명(11.92%)순으로 보직 교사들이 전체 교원위원 중 40.40%를 차지하고 있어 학교 교육 계획을 기획하는 중추적인 보직 교사들이 많이 선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3-9>

교원위원 직급별

구 분	학교장	교감	보직교사	평교사	계
초등학교	106	63	176	144	489
중 학교	37	16	75	32	160
고등학교	23	11	50	12	96
특수학교	2		4	4	10
계	168	90	305	192	755
비율(%)	22.25	11.92	40.40	25.43	100

第Ⅳ章 學校運營委員會 運營 實態·問題點 分析

제주도내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는 1999학년도 6. 25현재, 168개교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이 개정(1999. 8. 31 법률 제6,007호 공포)되어 2000. 3.1일부터 시행으로 사립학교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면 모든 학교에 설치 운영하게 된다.

학교운영위원회가 일선 학교 운영의 법적 기구로 현장에 도입된 지 5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학교 자치 제도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시행 운영 과정에서 일부 갈등 및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한편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나, 그 구체적 실상을 들여다 보면 교육 자치의 원리를 단위 학교에서 구현하고자 했던 당초의 교육 개혁의 취지는 현재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와 연결되지 않는 점도 있음을 볼 수 있고, 오히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의 의사만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학교 운영을 합리화 해주는 구실을 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되고 있다.

따라서, 이장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기능·구성·운영 실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1999학년도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 참여하였던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한다.

第1節 學校運營委員會 運營 實態 分析

1. 學校運營委員會 基本 趣旨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구로 교육 공급자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교육에서 탈피하여 수요자 및 수혜자 위주의 학교 운영을 하기 위한 기구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 수요자들의 요구를 학교 운영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과 학교 운영과정의 공개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학교의 합리적 경영 추구에 그 근본 취지가 있는 것이다. 학교 운영은 학교운영위원회 중심으로 학교경영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 운영위원들이 기본 취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을 가늠 해 볼 수 있는 척도의 기준이 될 것이다.

첫째,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 인식도, 둘째, 위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받은 내용에 대하여 조사를 분석하였다.

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 인식에 대한 조사는 교육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기본 취지로 발표한 6개 항목의 기본 취지에 대하여 나타난 반응 <표4-1>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동의'와 '어느 정도 동의'의 비율을 보면, '학부모·교원·지역 사회 인사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이다(86.1%), '학교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 결정 기구'이다(84.5%), '정책 결정에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는 기구'이다(78.6%), '지역사회에서 학교 후원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구'이다(76.4%),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 의사 결정 기구'이다(72.7%), '학교장과 독립된 별도 기구'이다(5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 공동체 구축을 위한 장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장 단독에 의한 의사 결정을 가급적 자제하고, 감독청에 의한 타율적인 의사 결정이 아닌 학교 자체의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위한 기구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책 결정에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는 기구라는 인식에 있어서 전문 영역에 대한 비전문가의 심의는 합리성과 효과성을 확보하는 내용에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일부 가지고 있으나, 학교 정책을 결정하는 종합적인 내용에는 민주성과 합리성 및 효과성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다) 지역사회에서 학교 후원 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와 학교와의 관계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학교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 의사 결정 기구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라) 그러나 '학교장과 독립된 별도 기구'라는 인식 비율이 53%로 여러 가지 기본 취지 중 인식도 비율이 제일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일원으로 참가되므로, 학교장은 안전 심의 시 원안통과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 위원들은 '학교장과 독립된 별도 기구'라는 인식도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1〉 학교운영위원회 기본취지 인식도

기 본 취 지	1)	2)	3)	4)	5)	합계
1) 학교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의사결정 기구이다	213 (34.9)	303 (49.6)	65 (10.6)	20 (3.3)	10 (1.6)	611 (100)
2)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하는 지역 공동체이다	262 (42.9)	264 (43.2)	69 (11.3)	13 (2.1)	3 (0.5)	611 (100)
3) 정책결정에 민주성·합리성·효과성을 확보하는 기구이다	193 (31.6)	287 (47.0)	109 (17.8)	16 (2.6)	6 (1.0)	611 (100)
4) 학교교육 목표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집단의사 결정 기구이다	184 (30.1)	260 (42.6)	128 (21.0)	29 (4.7)	10 (1.6)	611 (100)
5) 학교장과 독립된 별도 기구이다	105 (17.2)	219 (35.8)	141 (23.1)	79 (13.0)	67 (10.9)	611 (100)
6) 지역사회에서 학교 후원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기구이다	200 (32.7)	267 (43.7)	107 (17.5)	28 (4.6)	9 (1.5)	611 (100)

1) 매우 동의한다 2) 어느 정도 동의한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 동의하지 않는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2) 운영위원의 전문성 연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위원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이수 여부’에 대한 반응〈4-2〉을 보면,

가) 운영위원 전문성 연수를 ‘3회 이상’ 받은 위원이 4.8%이고, ‘2회’ 15.7%, ‘1회’ 24.6%로, 1회 이상 연수받은 전체 위원 비율은 45.1%, 연수 미이수 위원이 54.9%로 나타나고 있다.

위원별 집단 교차 분석에서는 연수 미이수 비율이 교원위원이 상대적으로 높게 60.5%로 나타나고 있으며, 학부모 위원인 경우는 48.4%로 다른 위원들 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매년 제주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서 운영위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의무적인 사항이 아니고 권장 사항임으로 연수 참여 이수가 저조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나) 지역별 집단에서 연수 미이수 비율은 남제주군 소재학교 운영위원 58.6%, 북제주군 58.1%, 제주시 56.0%, 서귀포시 45.5%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연수

미이수 비율이 높은 지역소재 운영위원들의 농·어업에 많이 종사하는 지역으로 연수시간 내기가 어려워 연수 기회를 가지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2〉 운영위원 전문성 연수 이수 현황

구 분	3회 이상	2회	1회	없다	합계	비 고
교원위원	15 (6.0)	34 (13.7)	49 (19.8)	150 (60.5)	248 (100)	$\chi^2 = 16.638$ df = 6 p = 0.011
학부모위원	11 (4.4)	51 (20.4)	67 (26.8)	121 (48.4)	250 (100)	
지역위원	3 (2.8)	10 (9.4)	33 (30.8)	61 (57.0)	107 (100)	
계	29 (4.8)	95 (15.7)	149 (24.6)	332 (54.9)	605 (100)	

2. 學校運營委員會의 機能

초·중등교육법 제32조(운영위원회 기능 등)에 의거 운영위원회는 학교현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 교과용 도서 및 부교재 선정, 정규 학습 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중 학생의 교육 활동과 기타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다.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인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설치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에 관련한 심의 항목별 필요성에 대한 반응(표4-3)을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필요'와 '어느 정도 필요'의 비율을 보면, '학교의 예산 및 결산'(83.5%), '수학여행·학생야영 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81.3%),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81.1%), '방과후·방학중 유상 프로그램 실시'(78%), '학교현장·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77%),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73.8%),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69.8%), '평생 프로그램 설치'(68.2%), '교육과정의 편성·운영'(61.3%)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59.9%), '학사 운영 사항'(59.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학교 예산 및 결산'의 심의 기능에 있어서는 학교 운영의 세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예산 및 결산을 통하여 파악 할 수 있고, 학교 발전에 기여하는 운영지원비 및 발전기금 조성 등의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중요한

심의 기능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수학여행·학생 야영 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과 '방과후 또는 방학중 유상 프로그램 실시'는 학부모의 경비 부담 사항으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 필요성을 아주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기능 중에 한가지로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이후 학부모의 부담과 관련한 잡음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또한 많은 학교에서 유상 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되어 가시화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사항'과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학부모들의 관심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라) 그러나, 그외 심의 기능인 '평생 프로그램 설치'·'교육과정의 편성'·'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학사운영 사항' 등 심의사항은 학부모들의 금전적 부담을 하는 심의사항 보다 필요성 인식 비율이 낮은 이유는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들에게 전문성을 요구하는 심의 영역이므로 다른 심의기능 영역 보다 필요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어, 학부모 및 지역위원에 대한 전문성 능력 배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4-3〉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필요성

내 용	1)	2)	3)	4)	5)	합계
1) 학교현장·학칙 및 규정의 재·개정	188 (30.8)	282 (46.2)	87 (14.3)	38 (6.2)	15 (2.5)	610 (100)
2)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96 (15.7)	278 (45.6)	153 (25.1)	57 (9.4)	26 (4.2)	610 (100)
3)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	128 (21.0)	237 (38.9)	145 (23.8)	72 (11.8)	27 (4.5)	609 (100)
4)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158 (25.9)	268 (43.9)	126 (20.6)	49 (8.0)	10 (1.6)	611 (100)
5) 학사운영 사항	103 (16.9)	258 (42.2)	164 (26.8)	61 (10.0)	25 (4.1)	611 (100)
6) 방과후·방학중 유상 프로그램 실시	202 (33.1)	274 (44.9)	90 (14.7)	32 (5.2)	13 (2.1)	611 (100)
7) 학교의 예산 및 결산	259 (42.4)	252 (41.1)	68 (11.1)	25 (4.1)	8 (1.3)	611 (100)
8)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204 (33.4)	247 (40.4)	123 (20.1)	23 (3.8)	14 (2.3)	611 (100)
9) 수학여행·학생 야영수련 등 학부모가 경비 부담하는 사항	245 (40.1)	252 (41.2)	80 (13.1)	23 (3.8)	11 (1.8)	611 (100)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146 (23.8)	271 (44.4)	144 (23.6)	39 (6.4)	11 (1.8)	611 (100)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222 (36.4)	273 (44.7)	88 (14.4)	26 (4.3)	1 (0.2)	610 (100)

1) 매우 필요하다 2) 어느 정도 필요하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3. 學校運營委員會 構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제59조(위원의 선출)규정에 의거 운영위원은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을 선출하여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1인을 두도록 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목적은 학교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통하여 단위 학교 중심의 자율 경영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이 어떤 인사가 선출 되는나가 중요하며 이에 따른 대표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전문성 있는 위원들의 선출되어야 하므로,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첫째,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선출인사 성향과 둘째, 위원의 선출 과정에서 민주적 선출 여부에 대한 조사를 분석하였다.

1) 교원위원 선출 인사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인사에 대하여 나타난 반응(표4-4)을 보면, 교원위원 선출 인사 성향은 '학교경영에 협조적인 교원'(24.5%), '신망이 두터운 교원'(24.3%), '경력이 많은 교원'(18.7%), '부장 보직을 맡고 있는 교사'(17.3%), '학교경영에 건전한 비판을 잘하는 교사'(12.2%) '기타'(3.0%)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별 집단 교차 분석에서는 초등학교인 경우 '학교경영에 협조적인 교원'이, 중학교인 경우 '경력이 많은 교원'이, 고등학교인 경우 '신망이 두터운 교원'이, 다른 학교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선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원위원 성향별로 골고루 선출되었다고 생각이 되나, '학교 운영에 건전한 비판을 하는 교사'가 선출 비율이 낮은 것은 학교장들이 학교경영에 협조적인 교사가 교원위원으로 선출되기를 바라는 의도가 반영되지 않았는가로 볼 수 있다.

〈표4-4〉 교원위원 선출 인사

구 분	1)	2)	3)	4)	5)	6)	합계	비 고
초등학교	22 (8.9)	38 (15.4)	42 (17.0)	65 (26.3)	73 (29.6)	7 (2.8)	247 (100)	$\chi^2 = 32.788$ $df = 10$ $p = 0.000$
중학교	26 (12.5)	38 (18.2)	55 (26.3)	37 (17.7)	49 (23.4)	4 (1.9)	209 (100)	
고등학교	26 (17.5)	29 (19.5)	16 (10.7)	45 (30.2)	26 (17.4)	7 (4.7)	149 (100)	
계	74 (12.2)	105 (17.3)	113 (18.7)	147 (24.3)	148 (24.5)	18 (3.0)	605 (100)	

- 1) 학교경영에 건전한 비판을 잘하는 교원 2)부장 보직을 맡고 있는 교원 3)경력이 많은 교원
4)신망이 두터운 교원 5)학교경영에 협조적인 교원 6)기 타

2) 학부모 위원 선출 인사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인사에 대하여 나타난 전체적인 반응<표4-5>을 보면, 학부모위원 선출 인사 성향은 '평소 학교지원 활동 대표로 많이 참여하고 협조적인 인사'(69.3%), '학부모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15.6%), '경제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는 인사'(5.7%), '기타'(4.4%), '교육 현장 유경험 인사'(4.0%), '일반행정 유경험 인사'(1.0%)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집단 교차 분석에서는 학부모 위원 선출이 제주시 소재 학교인 경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인사'가, 서귀포시 소재 학교에서는 '학부모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가, 북제주군 소재 학교에서는 '교육현장 유경험 인사'와 일반행정 유경험 인사가, 남제주군 소재 학교에서는 '평소 학교지원 활동 참여 인사'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선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평소 학부모회에서 학년, 학급대표 학부모로 참여하였던 학부모들의 학부모 운영위원으로 많이 선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4-5> 학부모 위원 선출 인사

구 분	1)	2)	3)	4)	5)	6)	합계	비 고
제주시	19 (10.3)	4 (2.2)	1 (0.5)	25 (13.5)	129 (69.7)	7 (3.8)	185 (100)	$\chi^2 =$ 35.090 df = 15 p = 0.002
서귀포시	8 (6.1)	5 (3.8)	2 (1.5)	27 (20.5)	89 (67.4)	1 (0.8)	132 (100)	
북제주군	3 (2.3)	7 (5.4)	3 (2.3)	23 (17.7)	82 (63.1)	12 (9.2)	130 (100)	
남제주군	5 (3.1)	8 (4.9)		20 (12.3)	122 (75.3)	7 (4.3)	162 (100)	
계	35 (5.7)	24 (4.0)	6 (1.0)	95 (15.6)	422 (69.3)	27 (4.4)	609 (100)	

- 1) 경제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는 인사 2) 교육현장 유경험 인사 3) 일반행정 유경험 인사
4) 학부모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 5) 평소 학교지원 활동 대표로 많이 참여하고 협조적인 인사 6) 기 타

3) 지역위원 선출 인사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선출 인사에 대하여 전체적인 반응<표4-6>을 보면, 지역위원 선출 인사 성향은 '지역사회에서 저명한 인사'(50.4%), '교육 현장 유경험자'(15.5%), '동창회 인사'(10.0%), '경제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는 인사'(9.0%), '일반행정 유경험자 인사'(8.3%), '기 타'(6.8%)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집단 교차 분석에서는 지역위원 선출인사 성향은 제주시 소재 학교에서는

'경제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는 인사'·'교육현장 유경험 인사'·일반행정 유경험 인사가, 북제주군 소재 학교에서는 '동창회 인사'가, 남제주군 소재 학교에서는 '지역사회 저명 인사'가 다른 지역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선출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학교급별 집단 교차 분석에서는 초등학교 운영위원회는 '경제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는 인사'·'교육 현장 유경험자'·'지역사회에서 저명한 인사'가, 고등학교 운영위원회는 '일반행정 유경험 인사와 동창회 인사'가, 다른 학교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선출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인사도 학교교육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인사이어야 하며 또한,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다양한 인사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표4-6〉 지역위원 선출 인사

구 분	1)	2)	3)	4)	5)	6)	합계	비 고
제주시	19 (10.3)	40 (21.6)	22 (11.9)	80 (43.2)	15 (8.1)	9 (4.9)	185 (100)	$\chi^2 = 36.202$ df = 15 p = 0.002
서귀포시	11 (8.5)	27 (20.8)	11 (8.5)	64 (49.2)	13 (10.0)	4 (3.1)	130 (100)	
북제주군	10 (7.9)	12 (9.5)	9 (7.1)	63 (50.0)	18 (14.3)	14 (11.1)	126 (100)	
남제주군	14 (8.8)	14 (8.8)	8 (5.0)	96 (60.0)	14 (8.8)	14 (8.8)	160 (100)	
계	54 (9.0)	93 (15.5)	50 (8.3)	303 (50.4)	60 (10.0)	41 (6.8)	601 (100)	
구 분	1)	2)	3)	4)	5)	6)	합계	비 고
초등학교	25 (10.1)	41 (16.6)	15 (6.1)	138 (55.9)	9 (3.6)	19 (7.7)	247 (100)	$\chi^2 = 33.22$ df = 10 p = 0.000
중학교	16 (7.8)	31 (15.0)	13 (6.3)	105 (51.0)	28 (13.6)	13 (6.3)	206 (100)	
고등학교	13 (8.8)	21 (14.2)	22 (14.9)	60 (40.5)	23 (15.5)	9 (6.1)	148 (100)	
계	54 (9.0)	93 (15.5)	50 (8.3)	303 (50.4)	60 (10.0)	41 (6.8)	601 (100)	

- 1) 경제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는 인사 2) 교육현장 유경험 인사 3) 일반행정 유경험 인사
4) 지역사회에서 저명한 인사 5) 동창회 인사 6) 기 타

4) 위원 선출의 민주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과정에서 민주성 여부'에 대하여 p<.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전체적인 반응〈표4-7〉을 보면, '매우 민주적이다'와 '어느

정도 민주적이다' 89.5%로 운영위원 선출 과정에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되었음을 볼 수 있다.

〈표4-7〉 위원선출 과정에서 민주성 여부

구 분	1)	2)	3)	4)	5)	합계	비 고
초등학교	111 (44.4)	110 (44.0)	24 (9.6)	5 (2.0)		250 (100)	$\chi^2 = 12.22$ $df = 8$ $p = 0.142$
중학교	82 (39.0)	108 (51.4)	16 (7.6)	1 (0.5)	3 (1.4)	210 (100)	
고등학교	72 (48.3)	62 (41.6)	13 (8.7)	2 (1.3)		149 (100)	
계	265 (43.5)	280 (46.0)	53 (8.7)	8 (1.3)	3 (0.5)	609 (100)	

- 1) 매우 민주적이다 2) 어느 정도 민주적이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 비민주적이다
5) 매우 비민주적이다

4. 學校運營委員會 運營

학교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게 되는데 제주도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회기(회의 일수)는 연간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며, 운영위원들인 학교장·교원·학부모·지역위원들이 학교 운영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는 보다 개방적·민주적인 구조로 되어 있어, 위원들간의 역할 인식 차이와 논의 과정에서 위원들간의 의견들이 잘 수렴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소위원회는 안전 심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한 학년도 동안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사항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소위원회 활동 사항'·'학생들의 의사 반영 실태'·'회의 운영 과정에 어느 집단 위원의 의사가 많이 수렴되고 있는지'를 조사 분석하였다.

1)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사항

'각 학교에서 1년간 ('99. 3- 2000. 2.현재)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회수'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나타난 반응<표4-8>보면, '연 5-6회' 이상 회의 개최 비율이 90.2%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 집단 교차 분석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인 경우 연4회 이하, 중학교인 경우 연5-6회·연 9-10회, 고등학교인 경우 연7-8회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주도내 대부분이 학교에서 평균 2개월에 1회 정도의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나, 초등학교에서 연 4회이하 회의 개최한 비율이 14.2%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4-8> 한 학년도 동안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회수

구분	1)연4회 이하	2)연5-6회	3)연7-8회	4)연9-10회	5)연11회이상	합계	비 고
초등학교	35 (14.2)	127 (51.4)	73 (29.5)	11 (4.5)	1 (0.4)	247 (100)	$\chi^2 = 39.874$ $df = 10$ $p = 0.000$
중학교	11 (5.2)	137 (65.9)	41 (19.7)	17 (8.2)	2 (1.0)	209 (100)	
고등학교	13 (8.8)	66 (44.6)	63 (42.6)	6 (4.0)		148 (100)	
계	59 (9.8)	330 (54.7)	177 (29.4)	34 (5.6)	3 (0.5)	603 (100)	

2) 운영위원회 운영 과정에 따른 문제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큰 문제점'에 대하여 전체적 반응<표 4-9>을 보면, '형식적 회의'(36.1%), '기존 학부모 조직의 무력화'(30.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원별 집단 교차 분석에 있어서는 교원위원은 '학교장 책무성 약화' 학부모 위원은 '형식적 회의'와 '기존 학부모 조직의 무력화'가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교측에서 운영위원들의 의견에 대하여 진지하게 토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의사 결정하는 체제가 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9〉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큰 문제점

구 분	1)	2)	3)	4)	5)	6)	합계	비 고
교원위원	4 (1.8)	74 (32.9)	55 (24.4)	54 (24.0)	23 (10.2)	15 (6.7)	225 (100)	$\chi^2 = 26.393$ df = 10 p = 0.003
학부모위원	7 (3.2)	85 (38.7)	75 (34.1)	19 (8.6)	19 (8.6)	15 (6.8)	220 (100)	
지역위원	4 (4.1)	37 (38.1)	33 (34.0)	12 (12.4)	5 (5.2)	6 (6.2)	97 (100)	
계	15 (2.8)	196 (36.1)	163 (30.1)	85 (15.7)	47 (8.7)	36 (6.6)	542 (100)	

1) 위원 선출의 비민주성 2) 형식적 회의 3) 기존 학부모 조직의 무력화 4) 학교장 책무성의 약화 5) 기 타 6) 없다

3)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

학교운영위원회는 창의적이며, 전문적인 의견을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를 보조하는 '소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하여는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전체적인 반응〈표4-10〉을 보면,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59.9%),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이 미약하다'(16.9%)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제대로 구성 및 활동이 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다.

〈표4-10〉 소위원회 활동 사항

구 분	1)	2)	3)	4)	5)	합계	비 고
초등학교	36 (14.8)	36 (14.8)	25 (10.2)	144 (59.0)	3 (1.2)	244 (100)	$\chi^2 = 4.469$ df = 8 p = 0.813
중학교	28 (13.6)	37 (18.0)	13 (6.3)	126 (61.1)	2 (1.0)	206 (100)	
고등학교	21 (14.2)	28 (18.9)	9 (6.0)	88 (59.5)	2 (1.4)	148 (100)	
계	85 (14.2)	101 (16.9)	47 (7.8)	358 (59.9)	7 (1.2)	598 (100)	

1)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활동이 활발하다 2)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이 미약하다 3)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유명 무실하다 4)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5) 기 타

4) 교육 수요자인 학생 의사 반영 실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 반영 실태 사항’을 학교 급별 집단 전체적인 반응<표4-11>을 보면, ‘학생 대표를 운영위원회의에 참관시키지 않고 있다’(81.2%)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 집단 교차 분석에 있어서는 초등학교에서는 ‘학생을 참관시키지 않고 있다’ 중학교에서는 ‘학생을 출석토록 하여 발언 할 수 있도록 한다’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잘 반영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4-11>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 반영 실태

구 분	1)	2)	3)	4)	5)	합계	비 고
초등학교	4 (1.6)	5 (2.1)	3 (1.2)	19 (7.7)	215 (87.4)	246 (100)	$\chi^2 = 17.89$ $df = 8$ $p = 0.022$
중 학교	2 (1.0)	3 (1.4)	8 (3.8)	36 (17.2)	160 (76.6)	209 (100)	
고등학교	3 (2.0)	1 (0.7)	8 (5.4)	21 (14.2)	115 (77.7)	148 (100)	
계	9 (1.5)	9 (1.5)	19 (3.2)	76 (12.6)	490 (81.2)	603 (100)	

- 1) 학생 대표를 운영위원회의에 참관시켜 발언 할 수 있게 한다
- 2) 학생 대표를 운영위원회에 참관시키고 있으나 일체 발언은 할 수 없게 한다
- 3) 학생 대표를 운영위원회의에 참관시키고 학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부 교육활동 내용에 대하여만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4) 학생관련 안전심의시 필요에 따라 학생 대표를 운영위원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5) 학생 대표를 운영위원회의에 참관시키지 않고 있다

5)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별 영향력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 중 누구의 의견이 주로 수렴되고 있는지’ 전체적 반응<표4-12>을 보면, ‘사안에 따라 수렴되는 위원의 의견’(64.8%), ‘학부모 위원 의견’(14.8%)으로 나타나고 있어, 모든 운영위원 의견이 적절히 수렴되고 있으나 그 중에도 학부모 의견이 많이 수렴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4-12〉 학교운영위원회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원별 영향력

구분	1)	2)	3)	4)	5)	합계	비고
제주시	37 (19.8)	26 (13.9)	7 (3.7)	1 (0.6)	116 (62.0)	187 (100)	$\chi^2 = 46.908$ df = 15 p = 0.000
서귀포시	15 (11.4)	9 (6.8)	26 (19.7)	3 (2.3)	79 (59.8)	132 (100)	
북제주군	21 (16.3)	6 (4.7)	13 (10.1)	4 (3.1)	85 (65.8)	129 (100)	
남제주군	17 (10.6)	17 (10.6)	10 (6.3)	2 (1.3)	114 (71.2)	160 (100)	
계	90 (14.8)	58 (9.5)	56 (9.2)	10 (1.7)	394 (64.8)	608 (100)	

- 1) 학부모 위원 의견 2) 교원위원 의견 3) 교장의 의견 4) 지역위원 의견
5) 사안에 따라 수렴되는 위원의 의견

5. 學校運營委員會 運營 評價

학교운영위원회 운영한 결과를 위원회에 참여하였던 구성원들의 운영 성과에 따른 만족도가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가능성을 측정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운영결과 구체적인 항목별 평가와 학교운영위원회 기구의 필요성 인식도에 대한 조사를 분석하였다.

1) 운영 결과 항목별 평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9개 항목별 평가 반응〈표 4-13〉을 전체적으로 볼 때 ‘매우 그렇다’와 ‘어느 정도 그렇다’ 비율을 보면, ‘학교의 행정이 보다 더 공개적이다’(85.41%), ‘학교 행정의 민주성이 확립되었다’(78.2%), ‘교육자와 학부모간에 신뢰가 확립되었다’(68.2%), ‘학교내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었다’(65.8%),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가 활성화 되었다’(64.3%), ‘지역사회 주민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59.2%), ‘학부모들의 학교 발전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58.3%), ‘교육 효과가 제고되었다’(55.8%),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53.4%)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 행정이 보다 더 공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주성이 확립되고, ‘교육자와 학부모간에 신뢰가 확립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주민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관심도·학부모들의 학교 발전에 협조·교육 효과의 제고·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에 대한 결과에 대한 평가 반응 비율이 6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학교에서 지역사회 주민의 관심 갖도록 적극적인 홍보 부족으로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관심이 이전 보다 두드러지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 내용 등의 '교육 효과의 제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과 동시에 아직도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13〉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 평가

내 용	1)매우그렇다	2) 어느정도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합 계
1) 단위 학교의 교육자치가 활성화되었다	79 (12.9)	314 (51.4)	179 (29.3)	24 (3.9)	15 (2.5)	611 (100)
2)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77 (12.6)	249 (40.8)	229 (37.5)	35 (5.7)	21 (3.4)	611 (100)
3) 교육 효과가 제고되었다	60 (9.8)	281 (46.0)	212 (34.7)	39 (6.4)	19 (3.1)	611 (100)
4) 학부모들이 학교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110 (18.0)	246 (40.3)	195 (32.0)	44 (7.2)	15 (2.5)	610 (100)
5) 학교의 행정이 보다 더 공개적이다	203 (33.2)	319 (52.2)	82 (13.4)	6 (1.0)	1 (0.2)	611 (100)
6) 학교 행정의 민주성이 확립되었다	160 (26.2)	318 (52.0)	118 (19.3)	14 (2.3)	1 (0.2)	611 (100)
7) 교육자와 학부모간에 신뢰가 확립되었다	123 (20.1)	294 (48.1)	168 (27.5)	21 (3.5)	5 (0.8)	611 (100)
8) 학교내의 교육 행정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었다	92 (15.1)	310 (50.7)	171 (28.0)	30 (4.9)	8 (1.3)	611 (100)
9) 지역 사회 주민들의 학교 운영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82 (13.4)	280 (45.8)	207 (33.9)	30 (4.9)	12 (2.0)	611 (100)

2) 운영결과 종합적 성과 평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한 종합적 성과 평가’ 반응<표4-14>을 보면, ‘매우 성과 있다’와 ‘어느 정도 성과 있다’ 전체비율이 78.9%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 집단 교차 분석 결과 만족도는 초등학교 84.8%, 고등학교 79.9%, 중학교 71.1%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원별 집단에서는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전체적으로 ‘성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학부모위원’(83%), ‘지역위원’(81.3%), ‘교원위원’(73.5%)순으로 나타나 학부모 위원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교원위원은 다른 위원에 비하여 낮게 평가하고 있으나, 학교별로 점점 정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1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 종합적 성과에 대한 평가

구 분	1)	2)	3)	4)	5)	합계	비 고
초등학교	32 (12.8)	180 (72.0)	36 (14.4)	1 (0.4)	1 (0.4)	250 (100)	$\chi^2 = 21.137$ $df = 8$ $p = 0.007$
중학교	20 (9.5)	130 (61.6)	47 (22.3)	11 (5.2)	3 (1.4)	211 (100)	
고등학교	20 (13.4)	99 (66.5)	27 (18.1)	2 (1.3)	1 (0.7)	149 (100)	
계	72 (11.8)	409 (67.1)	110 (18.0)	14 (2.3)	5 (0.8)	610 (100)	

구 분	1)	2)	3)	4)	5)	합계	비 고
교원위원	21 (8.4)	162 (65.1)	56 (22.5)	7 (2.8)	3 (1.2)	249 (100)	$\chi^2 = 12.47$ $df = 8$ $p = 0.131$
학부모위원	39 (15.4)	172 (67.6)	37 (14.6)	4 (1.6)	2 (0.8)	254 (100)	
지역위원	12 (11.2)	75 (70.1)	17 (15.9)	3 (2.8)		107 (100)	
계	72 (11.8)	409 (67.1)	110 (18.0)	14 (2.3)	5 (0.8)	610 (100)	

1) 매우 성과가 있다 2)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 성과가 없다 5) 전혀 성과가 없다

3) 학교운영위원회 기구의 필요성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기구의 필요성’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표4-15>을 보면, ‘매우 필요’와 ‘어느 정도 필요’가 82.7%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 집단 교차 분석에 있어서는 초등학교 운영위원은 ‘필요한 기구’라는 반응 비율이 84.8%로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모든 위원들의 전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기구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4-15> 학교운영위원회 기구의 필요성

구 분	1)	2)	3)	4)	5)	합계	비 고
초등학교	77 (30.8)	135 (54.0)	28 (11.2)	9 (3.6)	1 (0.4)	250 (100)	$\chi^2 = 18.565$ $df = 8$ $p = 0.017$
중학교	57 (27.4)	109 (52.4)	24 (11.5)	12 (5.8)	6 (2.9)	208 (100)	
고등학교	51 (34.5)	72 (48.6)	24 (16.2)	1 (0.7)		148 (100)	
계	185 (30.5)	316 (52.2)	76 (12.5)	22 (3.6)	7 (1.2)	606 (100)	

- 1) 매우 필요한 기구이다 2) 어느 정도 필요한 기구이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 필요 없는 기구이다 5) 매우 필요 없는 기구이다

第2節 學校運營委員會 改善要求 事項 分析

1. 分權化 領域

분권화란 조직 구성원들의 전문적인 분화에 따라 적정하게 권한을 위임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학교 운영의 의사 결정 과정에 다양한 관련 집단인 학교장·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학생의 참여를 증진시킴으로써 의사 결정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역할 분담이 필요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분권화 분야의 개선 방안 요구 사항

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적격 위원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5항에 의하면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 한다고 되어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어느 위원 중에서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표4-16>을 보면,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 모두가 '학부모 위원 중에서'(56.3%), '모든 위원 중에서'((23.6%)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원별 집단 교차 분석에 있어서는 위원장 적격자로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 위원' 중에서, 지역위원은 '지역위원' 중에서, 위원장 적격자라고 각자의 입장에서 반응하고 있다.

이는 전체적으로 위원장 적격 위원은 '학부모위원 중에서' 선출이 되어야 한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위원장 피선출권을 모든 위원에게 부여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위원장 선출이 되도록 하는 것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16> 학교운영위원 중 위원장 적격 위원

구 분	1) 학교장	2) 교사위원 중에서	3) 학부모위원 중에서	4) 지역위원 중에서	5) 모든위원 중에서	합계	비 고
교원위원	52 (20.9)	9 (3.6)	113 (45.4)	9 (3.6)	66 (26.5)	249 (100)	
학부모위원	21 (8.3)	4 (1.6)	173 (68.3)	8 (3.2)	47 (18.6)	253 (100)	$\chi^2 = 36.357$ $df = 8$
지역위원	12 (11.2)	1 (0.9)	57 (53.3)	6 (5.6)	31 (29.0)	107 (100)	$p = 0.000$
계	85 (14.0)	14 (2.3)	343 (56.3)	23 (3.8)	144 (23.6)	609 (100)	

2) 학교운영위원회 위상 및 성격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 및 성격은 어떤 형태로 발전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하여 운영위원별 집단의 반응<표4-17>을 보면, 전체적으로 '심의 기구'(39.1%),

‘자문 기구’(29.9%), ‘의결 기구’(15.7%), ‘학교 자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15.3%)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원별 집단 교차 분석에서는 교원위원은 자문 기구로, 학부모 위원은 의결·심의 기구로 운영하는 것을 바라는 반응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공립학교에서 현행과 같이 모든 사항을 심의 기구로 운영하지 말고 학교에서 안전에 따라 의결 사항, 자문 사항, 심의 사항 등으로 사전에 규정하여 사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표4-17〉 학교운영위원회 위상과 성격

구 분	1)의결기 구	2)자문기 구	3)심의기 구	4)학교자체적 으로 정하도록 한다	합계	비 고
교원위원	12 (4.8)	115 (46.0)	85 (34.0)	38 (15.2)	250 (100)	
학부모위원	63 (25.3)	39 (15.7)	107 (43.0)	40 (16.1)	249 (100)	$\chi^2 = 76.641$ $df = 6$ $P = 0.000$
지역위원	20 (18.7)	27 (25.2)	45 (42.1)	15 (14.0)	107 (100)	
계	95 (15.7)	181 (29.9)	237 (39.1)	93 (15.3)	606 (100)	

3) 교육 수요자 학생 의견 반영 방안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게 하기 위해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방안’에 대한 전체적 반응(표4-18)을 보면, ‘운영위원회 참관은 불허하고 학생회 조직인 대의원회 등에서 건의안을 낼 수 있도록 한다’(46.1%), ‘학생 대표를 운영위원회에 참관시키고 발언 할 수 있도록 한다’(31.7%)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원별 집단 교차 분석에 있어 교원위원은 ‘대의원 회의에서 건의안 등으로 참여’를 학부모 위원은 ‘학생을 운영위원 자격으로 참여’를 지역위원은 ‘학생을 참여시켜 발언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반응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4-18〉 학교운영위원회의에 학생 참여 방안

구 분	1)	2)	3)	4)	5)	6)	합계	비 고
교원위원	12 (4.8)	61 (24.4)	6 (2.4)	133 (53.2)	26 (10.4)	12 (4.8)	250 (100)	$\chi^2 = 28.542$ $df = 10$ $p = 0.001$
학부모위원	21 (8.3)	91 (36.3)	10 (4.0)	104 (41.4)	23 (9.2)	2 (0.8)	251 (100)	
지역위원	8 (7.5)	41 (38.3)	7 (6.6)	43 (40.2)	7 (6.5)	1 (0.9)	107 (100)	
계	41 (6.7)	193 (31.7)	23 (3.8)	280 (46.1)	56 (9.2)	15 (2.5)	608 (100)	

- 1) 학생 대표를 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여토록 하다
- 2) 학생 대표를 운영위원회에 참관시키고 발언 할 수 있도록 한다
- 3) 학생 대표를 운영위원회에 참관시키되 발언은 할 수 없도록 한다
- 4) 운영위원회에 참관은 불허하고, 학생회 조직인 대의원회 등에서 건의안을 낼 수 있도록 한다
- 5) 학생들을 운영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6) 기 타

4) 소위원회 활동 전망

학교운영위원회의 안건 심의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소위원회 활동 전망'에 대한 전체적 반응〈표4-19〉을 보면, '매우 활발히 활동'과 '어느 정도 활동이 될 것이다' 비율이 49.0%이고, '형식적일 것이다'·'거의 활동이 안될 것이다'·'소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것이다'를 합한 비율이 50.0%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급 집단 교차 분석에 있어서는 소위원회 활동 전망을 회의적(懷疑的)으로 보는 비율이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운영위원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법규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표4-19〉 소위원회 활동 전망

구 분	1)	2)	3)	4)	5)	6)	합계	비 고
초등학교	21 (8.4)	110 (44.4)	81 (32.7)	25 (10.1)	8 (3.2)	3 (1.2)	248 (100)	$\chi^2 = 34.571$ $df = 10$ $p = 0.000$
중학교	13 (6.2)	86 (40.9)	75 (35.7)	22 (10.5)	13 (6.2)	1 (0.5)	210 (100)	
고등학교	11 (7.3)	57 (38.0)	39 (26.0)	13 (8.7)	28 (18.7)	2 (1.3)	150 (100)	
계	45 (7.4)	253 (41.6)	195 (32.0)	60 (9.9)	49 (8.1)	6 (1.0)	608 (100)	

- 1) 매우 활발히 활동할 것이다 2) 어느 정도 활동이 될 것이다 3) 형식적일 것이다
- 4) 거의 활동이 안될 것이다 5) 소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것이다 6) 기 타

5) 운영위원 정수의 적정성

‘학교운영위원회 법정 위원수(1999학년도 기준)는 7-15명으로 되어 있으나, 위원 정수 적정성’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표4-20>을 보면, ‘현행대로가 적당하다’(61.5%), ‘학교별로 재량에 맡겨야 한다’(24.9%)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4-20>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적정성

구 분	1)	2)	3)	4)	5)	합계	비 고
제주시	9 (4.8)	10 (5.4)	12 (65.6)	43 (23.1)	2 (1.1)	186 (100)	$\chi^2 = 25.226$ $df = 12$ $p = 0.014$
서귀포시	3 (2.3)	22 (16.7)	82 (62.1)	23 (17.4)	2 (1.5)	132 (100)	
북제주군	3 (2.3)	14 (10.8)	70 (53.8)	43 (33.1)		130 (100)	
남제주군	2 (1.3)	14 (8.7)	101 (62.3)	43 (26.5)	2 (1.2)	162 (100)	
계	17 (2.8)	60 (9.8)	375 (61.5)	152 (24.9)	6 (1.0)	610 (100)	

1) 축소하여야 한다 2) 늘려야 한다 3) 현행대로가 적당하다 4) 학교별로 재량에 맡겨야 한다

5) 기 타



2. 專門化 領域

교육 활동의 본질과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교육 활동의 전문성이 보장되는 제도이다. 이런 점에서도 단위 학교에서 교육에 관한 의사 결정과 학교경영에 반드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교육 활동에 참여와 의사 결정에는 전문적 식견과 능력이 있는 인사들의 참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전문화 분야의 개선 방안 요구 사항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1) 전문성 있는 심의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전체적 반응<표4-21>을 보면, ‘운영위원 각종 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46.8%), ‘사전에 안전 심의 자료를 운영위원에게 제공하는 일’(21.5%)로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21〉 운영위원회의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한 방안

구 분	1)	2)	3)	4)	5)	합계	비 고
교원위원	112 (44.8)	23 (9.2)	79 (31.6)	31 (12.4)	5 (2.0)	250 (100)	
학부모위원	126 (49.8)	29 (11.5)	58 (22.9)	36 (14.2)	4 (1.6)	253 (100)	$\chi^2 = 7.767$ $df = 8$ $p = 0.457$
지역위원	47 (44.7)	11 (10.5)	30 (28.6)	17 (16.2)		105 (100)	
계	285 (46.8)	63 (10.4)	167 (27.5)	84 (13.8)	9 (1.5)	608 (100)	

- 1) 운영위원 각종 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전문성을 높인다
- 2)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본 회의전에 안전을 심의토록 한다
- 3) 사전에 안전심의 자료를 운영위원들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 4) 학교 조직인 교과협의회, 학년협의회 등의 논의 과정에 운영 위원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 5) 기 타

2) 위원 연수 의무화 방안

‘학년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운영 위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일 수 있게 일정한 시수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 필요성’에 대하여는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전체적인 반응(표4-22)을 보면, ‘매우 찬성한다’와 ‘어느 정도 찬성한다’ 비율이 72.1%로 나타나고 있어, 운영 위원으로 선출 된 후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의무적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4-22〉 학교운영위원회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의무화 방안

구 분	1)	2)	3)	4)	5)	합계	비 고
교원위원	37 (14.9)	133 (53.4)	57 (22.9)	13 (5.2)	9 (3.6)	249 (100)	
학부모위원	62 (24.4)	123 (48.4)	55 (21.7)	5 (2.0)	9 (3.5)	254 (100)	$\chi^2 = 14.932$ $df = 8$ $p = 0.060$
지역위원	20 (18.7)	65 (60.7)	17 (15.9)	2 (1.9)	3 (2.8)	107 (100)	
계	119 (19.5)	321 (52.6)	129 (21.1)	20 (3.3)	21 (3.5)	610 (100)	

- 1) 매우 찬성한다 2) 찬성한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3) 운영위원 전문성 연수 프로그램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되어야 할 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하여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전체적인 반응<표4-23>을 보면, ‘교육과정 운영 해설’(36.9%), ‘교육 관련 법규 해설’(24.3%) 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학부모위원·지역위원 모두가 운영위원들의 교육의 전문성에 관련된 교육과정과 교육 법규에 대한 연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4-23> 위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 프로그램

구 분	1)	2)	3)	4)	5)	6)	합계	비 고
교원위원	23 (9.2)	59 (23.6)	96 (38.4)	19 (7.6)	45 (18.0)	8 (3.2)	250 (100)	$\chi^2 = 14.070$ $df = 10$ $p = 0.170$
학부모위원	34 (13.7)	71 (28.6)	86 (34.7)	16 (6.5)	38 (15.3)	3 (1.2)	248 (100)	
지역위원	13 (12.3)	17 (16.0)	41 (38.7)	13 (12.3)	20 (18.8)	2 (1.9)	106 (100)	
계	70 (11.6)	147 (24.3)	223 (36.9)	48 (7.9)	103 (17.1)	13 (2.2)	604 (100)	

1) 회의 진행 방법 2) 교육 관련 법규 해설 3) 교육과정 운영 해설 4) 예·결산 심의 요령
5) 선진 학교 시찰 6) 기 타

3. 民主化 領域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 의사 결정의 민주화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단위 학교 구성 주체들에게 교육 활동 사항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사결정 과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구성원들의 학교 운영 사항을 결정하는데 참여함으로써 학교 운영에 관한 이해관계(利害關係)를 표현하고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여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화 분야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에서 학교장 제외 방안

‘학교장은 학교경영의 최고 집행 책임자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직접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표4-24>을 보면, ‘매우 반대한다’와 ‘어느 정도 반대한다’ 41.2%, ‘매우 찬성한다’와 ‘어느 정도 찬성한다’ 비율이 40.8%로 나타나고 있다.

위원별 교차 분석에 있어서는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고, 학부모위원·지역위원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위원들 간에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4-24> 교장을 운영 위원에서 제외하는 방안

구 분	1)	2)	3)	4)	5)	합계	비 고
교원위원	38 (15.2)	65 (26.1)	32 (12.9)	46 (18.5)	68 (27.3)	249 (100)	$\chi^2 = 17.355$ df = 8 p = 0.027
학부모위원	21 (8.4)	79 (31.6)	57 (22.8)	46 (18.4)	47 (18.8)	250 (100)	
지역위원	13 (12.3)	31 (29.2)	20 (18.9)	17 (16.0)	25 (23.6)	106 (100)	
계	72 (11.9)	175 (28.9)	109 (18.0)	109 (18.0)	140 (23.2)	605 (100)	

1) 매우 찬성한다 2) 어느 정도 찬성한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2) 학부모회·교직원회 안전 발의 방안

‘다양한 안전 심의를 위해 학부모회와 교직원 회의(교무회의)에서도 안전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전체적인 반응<표4-25>을 보면, ‘매우 찬성한다’와 ‘어느 정도 찬성한다’ 비율이 79.6%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집단 교차 분석에서는 남제주군 지역 소재 학교 운영위원들이 학부모회 및 교무 회의에서 안전 발의 방안에 찬성하는 비율이 다른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재, 학교의 학부모회와 교무 회의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전를 제출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표4-25〉 학부모회와 교직원회 안건 발의권 부여 방안

구 분	1)	2)	3)	4)	5)	합계	비 고
제주시	47 (25.1)	96 (51.4)	41 (21.9)	2 (1.1)	1 (0.5)	187 (100)	$\chi^2 = 24.538$ df = 12 p = 0.017
서귀포시	41 (31.0)	62 (47.0)	22 (16.7)	5 (3.8)	2 (1.5)	132 (100)	
북제주군	47 (37.0)	56 (44.1)	15 (11.8)	6 (4.7)	3 (2.4)	127 (100)	
남제주군	35 (21.8)	99 (61.5)	20 (12.4)	5 (3.1)	2 (1.2)	161 (100)	
계	170 (28.0)	313 (51.6)	98 (16.1)	18 (3.0)	8 (1.3)	607 (100)	

1) 매우 찬성한다 2) 어느 정도 찬성한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3) 연간 회의 개최 횟수 의무화 방안

‘회의 개최 최소 횟수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는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전체적인 반응〈표4-26〉을 보면, ‘매우 찬성한다’와 ‘어느 정도 찬성한다’ 비율이 52.4%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 개최를 하고 있으나, 수시로 학교운영 사항을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들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연간 회의 개최 최소 횟수를 정하여 운영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4-26〉 운영위원회 연간 회의 개최 횟수 의무화 방안

구 분	1)	2)	3)	4)	5)	합계	비 고
교원위원	17 (6.9)	107 (43.3)	70 (28.3)	32 (13.0)	21 (8.5)	247 (100)	$\chi^2 = 10.075$ df = 8 p = 0.260
학부모위원	33 (13.1)	104 (41.3)	64 (25.4)	30 (11.9)	21 (8.3)	252 (100)	
지역위원	17 (16.0)	39 (36.8)	33 (31.2)	10 (9.4)	7 (6.6)	106 (100)	
계	67 (11.1)	250 (41.3)	167 (27.6)	72 (11.9)	49 (8.1)	605 (100)	

1) 매우 찬성한다 2) 어느 정도 찬성한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 반대한다 5) 매우 반대한다

4. 教育自治 實現을 위한 效率的 運營 方案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 자치제의 기본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를 정착시키고 또한, 단위 학교의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기구이다. 여기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개선 방안 요구 자료에 대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1)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우선 항목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 자치 기본 취지에 맞게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항목'에 대한 반응(표4-27)을 보면, 전체적 집단에서는 '학교 단위의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일'(41.7%),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지방 자치기관 구성원의 선출에 참여하는 일'(20.5%),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학교 교육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16.2%), '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활동을 하는 일'(15.4%),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에서 탈피하는 일'(6.2%)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원별 집단에서는 모든 위원이 첫번째 비중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단위의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두 번째 비중으로 교원위원·지역위원은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지방자치기관 구성원의 선출에 참여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학부모 위원은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학교 교육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이라고 인식하고 있어 위원간에 견해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표4-27〉 학교운영위원회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

구 분	1)	2)	3)	4)	5)	합계	비 고
교원위원	59 (23.6)	112 (44.8)	24 (9.6)	39 (15.6)	16 (6.4)	250 (100)	$\chi^2 = 20.583$ $df = 8$ $p = 0.008$
학부모위원	41 (16.2)	108 (42.7)	55 (21.8)	35 (13.8)	14 (5.5)	253 (100)	
지역위원	25 (23.4)	34 (31.8)	20 (18.7)	20 (18.7)	8 (7.4)	107 (100)	
계	125 (20.5)	254 (41.7)	99 (16.2)	94 (15.4)	38 (6.2)	610 (100)	

- 1)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지방 교육자치 기관 구성원의 선출에 참여하는 일
- 2) 학교 단위의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일
- 3)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학교 교육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
- 4) 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 활동을 하는 일
- 5)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에서 탈피하는 일

2) 운영위원회 효율적 운영 방안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방안'에 대하여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이에 대한 반응<표4-28>을 보면, 전체적으로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33.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교육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31.7%), '학교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24.6%),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8.1%),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2.2%)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영 위원별 집단에서는 $P < .05$ 수준에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으나, 학부모위원은 첫번째 비중을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가장 높고, 교원위원·지역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교육 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아 학부모 위원과 달리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4-28>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해결 방안

구 분	1)	2)	3)	4)	5)	합계	비 고
교원위원	18 (7.3)	79 (31.7)	78 (31.3)	66 (26.5)	8 (3.2)	249 (100)	$\chi^2 = 8.396$ $df = 8$ $p = 0.396$
학부모위원	21 (8.5)	80 (32.4)	92 (37.2)	52 (21.1)	2 (0.8)	247 (100)	
지역위원	10 (9.5)	32 (30.2)	31 (29.2)	30 (28.3)	3 (2.8)	106 (100)	
계	49 (8.1)	191 (31.7)	201 (33.4)	148 (24.6)	13 (2.2)	602 (100)	

- 1)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교육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 3)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 4) 학교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
- 5)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第3節 學校運營委員會 問題點 要約

제1절과 제2절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와 연구자가 일선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면서 느낀 점 등을 종합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 현황 및 문제점을 논하면 다음과 같다.

1. 學校運營委員會 運營 實態 問題點

1)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들이 기본 취지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학교운영위원회의 발전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의 기준이 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 중에 '학교장과 독립된 별도 기구'(53%) 라는 인식도가 가장 낮다. 이는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일원으로 참가되므로 학교장은 안전 심의 시 원안 통과 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들은 '학교장과 독립된 별도 기구'라는 인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운영위원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전문적 연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수 기회는 있으나 연수 이수 사항이 권장 사항으로 되어 있어, 많은 운영위원들의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연수에 참가되지 않아 54.9% 연수 미이수율이 되어 저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심의 사항에 대하여 항목별 심의 필요성 정도를 보면, 다른 심의 사항들 보다 '평생 프로그램 설치'(68.2%), '교육과정의 편성'(61.3%), '교과서·부교재 선정'(59.9%), '학사 운영 사항'(59.1%)등에 대하여 필요성 비율이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직접 교육과 관련된 심의 사항으로 교육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는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 위원들의 운영위원 역할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교원위원은 학부모 위원이나 지역 위원과는 달리 교육에 대하여 잘 알고, 학교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자신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교장의 학교 경영권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이므로, 학교장들이 자신의 학교 경영에 협조하는 교원의 선출되기를 바라는 경향 등으로 교원위원 선출된 인사 중에 '학교 운영에 건전한 비판을 하는 교사'(12.2%) 선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으며 이런 현상은 중·고등학교 보다 초등학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학부모 위원은 평소 학부모회에서 학년, 학급 대표로 참여하였던 학부모 들 선출 비율이 69.3%가 되어, 학교측 추천 등을 통하여 학부모 위원들이 많이 선출되고 있다.

지역위원 선출시 공립학교인 경우 교원들의 일정기간 순환제로 근무하게 되므로 지역 인사와 교분을 갖기가 어려워 지역내 적격 지역위원 선출에도 어려움이 있고, 교원위원·학부모위원 추천으로 지역위원에 선출된 이후에도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및 활동 시간과 본인의 업무(사업)시간 중복 등으로 회의 참여 및 활동 실적이 저조하다.

4)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되어 개최되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로 이루어지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 회의 소집은 학교장 이외의 위원들의 요구하여 소집되는 임시회는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일부 초등학교에서 한 학년 동안 운영위원회의 연 4회이하 개최한 비율이 14.2%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학교에서 운영위원회를 자주 개최하는 것을 기피하는 경향과 학부모·지역위원들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소극적인 태도에도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런 점에서 학교에서는 대부분 심의 안전이 있을 때만 회의 소집되는 경우가 많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시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이로 인하여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교장과 교사 위원들에 의해 주도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어,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가 '형식적 회의'로 인식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반응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조례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두어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학교에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고'(59.5%), '소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활동이 미약하다'(16.9%)로 나타나고 있어, 소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제대로 활동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 운영에 복잡한 절차들로 인하여 기피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 반영에 대하여, 학교급별 집단에서 나타난 반응을 보면, '학생 대표를 운영위원회의에 참관시키지 않고 있다'(81.2%)로 나타나고 있어,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잘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5)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평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 위원회에 참여하였던 구성원들의 운영 성과에 따른 만족도가 학교운영위원회 발전 가능성을 측정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여러 가지 운영 결과에 대한 구체적 항목별 평가 반응 중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53.4%) 항목 평가 비율이 다른 항목에 비하여 제일 낮은 것은 아직도 학교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의 실시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결과에 대한 종합적 성과는 전체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으나 교원위원들은 다른 위원에 비하여 운영 성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다.

2. 學校運營委員會 改善 方案 要求事項 分析

1) 분권화 영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인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중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피선출권을 모든 위원에게 부여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위원장 선출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상과 성격을 공립학교에서는 학부모위원·지역위원은 현행대로 심의 기구로 운영되는 것을 바라고 있으나, 교원위원은 자문 기구화 하는 것을 바라고 있어 위원간에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 의견이 반영되게 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 방안'에 대한 전체적 반응을 보면, '운영위원회 참관을 불허하고 학생회

조직인 대의원회 등에서 건의안을 낼 수 있도록 한다'(46.1%), '학생 대표를 운영위원회에 참관시키고 발언 할 수 있도록 한다'(31.7%)순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운영위원 자격으로 회의 참여 시 키자는 항목은 상당히 낮게 반응하고 있어, 아직도 운영위원들의 학생관을 '가르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유추 할 수 있으나,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 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심의 효율화를 위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소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운영위원들은 앞으로 소위원회 활동 전망을 '형식적일 것이다'·'거의 활동이 안될 것이다'·'소위원회 구성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비율이 50%로 소위원회 구성·운영 전망을 밝게 보고 있지 않아, 이는 분권화가 되지 않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도록 법규로 정하여야 한다.

2) 전문화 영역

운영 위원들의 전문성 있는 심의를 위해서는 앞으로 전문성 능력 제고를 위하여 '각종 연수를 체계적 실시'(46.8%)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은 운영위원 자신도 전문성 부족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학년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에 대한 전문성 지식을 높일 수 있게 일정한 시수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와 이에 따른 교육에 대한 전문성 능력을 배양 할 수 있는 연수 프로그램으로 '교육과정 해설과 교육법규 해설'에 대한 연수를 바라고 있어, 이에 따른 기본적 연수들이 필요하다.

3) 민주화 영역

'학교장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방안'에 전체 응답자 41.2%가 반대하고, 40.8%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학부모·지역위원은 학교장을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바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위치이므로 위원회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학교운영위원회는 의사 결정 기구로, 학교장은 집행기관 책임자로,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의 분리를 통한 역할 분담(분권화)을 바라고 있음도 시사하고 있다.

'학부모 모임인 학부모회와 교직원회(교무회의) 등을 통하여 운영위원회에 안건을 제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보장' 방안에 대하여 79.6%로 높게 찬성률

하고 있는 결과로 보아, 일반 학부모 및 일반 교직원들의 이러한 제도화된 기구를 통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들에게도 안전을 제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최는 대부분 심의 안전이 있을 때만 회의 소집이 되고 있으나, 심의 안전이 없을 때도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학교 운영 사항 등을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들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자주 가질 수 있도록, 연간 회의개최 최소 횟수 의무화하여 운영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4)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효율적 운영 방안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단위의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이라고 전체 응답자 비율이 41.7%로 가장 높게 답하고 있어, 교육 자치의 근본 취지에 맞는 '학교 단위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교원위원과 지역위원은 '교육감 및 교육위원 등 지방 자치기관 구성원의 선출에 참여하는 일'(20.5%)이라고 두 번째로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이 교육감 및 교육위원을 선출하는 권한을 갖는 현실에서 이에 대한 영향력을 사실상 학교장이 행사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⁵⁰⁾ 이러한 사례들은 개선되어야 한다.

학부모 위원들은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학교 교육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이라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부모와 지역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유도하여 학교 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참여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50) 권영주, 앞의 책, 1998, p. 49.

第 V 章 學校運營委員會 運營 改善方案

교육부의 교육 자치제 설명 자료(1988)는 교육 자치제 기본 원리로 지방분권의 원리, 주민 참여의 원리, 교육행정 독립의 원리, 자주적 재정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 자치제 아래에서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는 교육 자치제의 원리인 분권화·전문화·민주화가 학교경영 일반적 원리들과 같이 고려하여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운영위원회는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의 학교에서 교육 자치 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사항을 분석, 이들이 시사점을 우리 나라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第1節 外國의 學校 運營 參與 組織 比較 및 示唆點

세계는 장래의 국가 발전 계획의 일환으로 교육 개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개혁에서는 학교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새로이 인식하고 두 개의 커다란 흐름을 형성하고 있는데, 『학교 교육의 효과성 운동』(School Effectiveness Movement)과 『학교 단위 책임경영제』(School-Based Management)가 그것이다. 그 중 학교 단위 책임 경영제는 우리 나라 교육 개혁 중 초·중등교육의 핵심을 이루는 『학교운영위원회』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이것은 그간 정부 차원의 교육 개혁이 학교 현장에서는 기대만큼의 성과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새로 도입된 경영 방식으로 영국, 호주, 캐나다, 미국과 스칸디나비아반도의 여러 나라에서도 확산되고 있다.⁵¹⁾ 학교 단위 경영 체제의 확립을 위해 외국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학교 자치 기구로서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유사 형태인 운영 기구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정착을 위한 개선 방안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외국의 주요국인 미국, 영국, 독일(학부모협의회)의 학교 운영 참여 조직 형태는 유사한 점이 많으나, 일본의 학부모 조직인 사친회(P.T.A)는 기본 취지, 구성, 기능 및 운영면에서 다른 나라들과 상이한 점이 많다.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5-1>와 같다.

51) 교육부, 앞의책, 1996, p. 13.

〈표5-1〉 외국과 우리 나라 학교운영 참여조직 특징 비교⁵²⁾

구 분	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	독일의 학부모 협의회	일본의 사친회	한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설치목적	○ 긍정적 학습 풍토를 촉진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구	○ 교직원 인사·교육과정 등 학교 경영 전반에 관한 책임 기구	○ 학교 교육에 참여와 협력 기구	○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부모에 대한 성인 교육 ○ 아동·청소년 훈육에 부모와 교원이 협력하는 기구	○ 학교운영에 학부모·교원·지역인사 참여로 학교 정책 결정과 지역·학교 특성 교육에 대한 의사결정(심의·자문)기구
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출	○ 교장, 교사, 교직원, 학부모,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 ○ 학생도 참여	○ 교장, 교사, 학부모, 교육청 임명인사, 호선위원으로 구성	○ 교장, 교사, 학부모, 학생으로 구성 ○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 대표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한 위원이 됨.	○ 교사회원, 학부모 회원으로 구성	○ 학부모·교장(당연직)·교원·지역인사로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 학부모 위원·지역위원 중에서 선출
심의(의결) 사항	○ 학교단위 운영 위원회와 교육청 단위 운영 위원회 의결 사항이 구분됨.	○ 교육과정 심의 및 지원 ○ 예산 관리 ○ 교직원 임명, 관리, 해고 등	○ 보충 학습 실시 ○ 학교행사 ○ 학교에 정해진 예산 사용 범위 안에서 예산 집행 등	○ 아동·청소년 복지를 위한 활동 ○ 사회적 제 단체 및 기관과 협력	○ 교육과정 운영방법 등 심의(자문) ○ 예산·결산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 지역 사회교육 등 ○ 공립학교: 심의 사립학교: 자문(초·중등 교육법 및 조례로 규정)
운영(회의)	○ 연간 6회 내지 12회 정도 회의 개최 ○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	○ 전체 회의를 적어도 1학기(3학기제임)에 1회 개최 ○ 소위원회 활용	○ 회장 필요시 또는 회원 1/3 이상의 요구시 회의 소집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회장은 부모가 담당 ○ 임원의 임기는 1년(1년 중임 가능) ○ 총회 및 실행위원회는 적어도 매월 1회 개최	○ 학교장 또는 회원 1/3 이상 소집 요구시 위원장이 회의 소집 ○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 임기 1년(연임가능)

52) 정현웅,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분석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P.53.

1)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긍정적 학습 풍토를 촉진하기 위한 의사 결정 기구로서,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와 협력을 위한 기구이다. 교직원 인사 및 교육과정 등 학교경영 전반에 관한 책임 기구로서 존재하며,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하여 발전적인 제안과 심의 결정을 담당하고 있다. 학부모와 지역 인사가 학교 운영에 참여함으로써 주민 참여를 통한 단위 학교 자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학교는 물적·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다.

미국은 긍정적 학습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국은 학교 경영 전반에 관한 책임 기구로서, 독일은 학교교육에 참여와 협력 기구로서, 일본은 청소년의 복지 증진 및 부모에 대한 성인 교육을 목적으로 학교 운영 참여 조직이 구성되었다.

2)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장·교사·교직원·학부모 및 지역 주민 대표로 구성되고 있다. 영국의 경우는 교육청 임명 인사와 호선 위원이 포함되며, 미국 및 독일의 경우는 학생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학교 규모에 따라 구성 인원은 차이가 있으며, 학교에 따라 구성 비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교육구와 시 지역에 따라 구성 비율과 구성 인원을 달리하고 있다. 학교장은 자동으로 운영위원회의 상임위원이 되고 교사 및 학부모위원은 선출에 의하여 위원이 된다.

한편, 일본의 경우는 학부모와 교직원으로 구성되는 사친회로서 학생은 참여가 불가능하며, 학부모 중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사친회의 회원으로서 참여가 가능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학생도 학교 운영에 참여를 위한 통로를 마련하여 학교 운영의 한 주체로서 학교 운영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3)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미국의 경우 학교 단위 운영위원회에서는 학생의 활동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교육청 단위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정책에 관한 사항을 주로 다루고 있다. 영국의 학교운영위원회는 교육과정 심의 및 지원, 예산 관리, 교직원 임명 동의, 교직원의 관리, 해고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독일의 학부모 협의회는 전체 학급의 공동 관심사가 되는 문제를 다루며, 학생의 소풍, 수학여행, 야외수업, 야영 연습 등을 협의회에서 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위한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

4)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은 나라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학교의 발전을 위한 학부모들의 협력적인 활동 면에서는 큰 차이를 들어내지 않고 있다. 미국은 연간 6회 내지 12회 정도의 회의를 개최하며,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영국은 전체 회의를 1학기에 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수시로 소위원들이 모임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독일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가 소집되며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협력 기구에서의 교사의 활동은 근무상의 의무에 속한다. 규정에 따라 협력 기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은 봉사적 활동으로 고려된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은 상급 행정기관의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다.

5)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주는 시사점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교육 자치의 중심 기구로 운영되고 있어 이들이 운영 과정에서 많은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지방 교육 자치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고 중앙과 지방 교육 당국의 행정 활동이 단위 학교의 자율성과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주민 등의 학교 교육에 대한 참여 활동이 지방 정부의 수준 또는 지방 자치단체의 수준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에 관한 최고 의사 결정 단위에서도 지역주민(학부모)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단위 학교 운영에 있어서도 지역주민 및 관계 집단의 적극적 참여로 학교 운영의 효율화와 자율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제 집단(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학생 등)의 역할과 임무 및 권한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학부모들의 참여와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영국의 경우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다는 것이다.

넷째, 단위 학교 자치 기구에 학교 운영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이고, 학교장 및 상부 교육청과의 관계 설정이 법규에 의해 다양한 상황에 까지 규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지방 정부 수준에서 학부모 조직을 법제화하였고 그들의 정책 결정에의

참여를 권장 및 보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학교 자치 기구의 의사 결정과 그것의 범위 안에서 단위 학교내 교원단체(교사협의회)가 매우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분과별 교사 협의회 등은 법적 지위를 갖고 교내 장학 등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곱째, 영국의 경우 교사들의 대표성을 약화시키며 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하고 있다.

여덟째, 주요국의 경우 학교장의 위상이 교사들의 대표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행정 관리자 혹은 집행 책임자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아홉째,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 동향을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인 분권화·전문화·민주화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나타내면 다음<표5-2>과 같다.⁵³⁾

<표5-2> 분권화·전문화·민주화 측면에서 본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 동향

영역		내용
분권화	중적 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이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실제 권한을 갖는다. ○ 중앙과 지방교육당국의 활동이 단위학교의 자율성,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지방정부 수준에서 학부모 조직이 법제화 되어 있다. ○ 사립학교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
	행적 분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학부모, 지역인사, 학생의 역할과 임무 및 권한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다. ○ 단위학교 내에 자율적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학생단체가 법적으로 보장받고 있다. ○ 단위학교 내의 교원단체가 매우 큰 영향력을 갖도록 제도화 되어 있다.(영국 : 교원노조, 독일 : 교사협의회 등) ○ 학교운영위원회 산하에 각종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일정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한다. ○ 운영위원회 산하에 예·결산 소위원회, 교육과정 소위원회 등 전문위원회의 활동이 매우 활발하고 그 기능이 보장되어 있다. ○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학교 교육 활동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다. ○ 교사단체의 결정사항은 교장이 반듯이 지키도록 하고 있다.(독일) ○ 단위학교 내에서 의결기구(학교운영위원회, 교사단체 등)와 집행 기구(교장 등 사무조직)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추세이다.
전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명문화하고 있다. ○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의 내용이 다양하며 의사결정의 질적 수준이 높다. ○ 학교운영위원들을 위한 연수 체계가 이루어져 있다. ○ 교장 및 교직원위의 인사권을 갖고 있다.
민주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내의 교사단체, 학부모단체, 학생단체의 구성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 학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개인은 자신이 속한 단체를 통하여 학교 운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다. ○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형식적이지 않고 철저하고 세밀하다. ○ 회의 결과를 모든 학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 교사위원, 학부모위원의 선출이 완전히 민주적 절차에 의해 이루어진다.

53) 권영주, 앞의책, 1998, p. 23.

第2節 우리 나라 學校運營委員會 運營 改善 方案

본 연구는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學校 運營의 分權化

학교 운영의 분권화란 교육행정 단위간에 수직적·수평적 자주성을 확보 및 권한과 책임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임을 의미한다.⁵⁴⁾

1) '학교장과 독립된 별도' 기구라는 인식 확산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별도의 독립된 법정 기구'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기본 취지 중에 한가지이다. 그러나 아직도 운영위원들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과연 학교장과 별도의 기구로 학교내에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인식 확산이 되고 있지 않아, 학교의 최고의 의사 결정 기구는 학교장이라는 의식이 아직도 불식되지 않고 있어, 이에 따라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인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임을 잘 이해하고 운영위원회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한다. 특히, 학교장은 회의시 다른 운영위원들이 민주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이들의 의견을 편견 없이 수용하도록 노력할 때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독립된 기구라는 인식이 확산 될 수 있다.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에서도 단위 학교 내에서 의결 기구(학교운영위원회, 교사단체 등)와 집행 기구(교장 등 사무조직)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는 추세이다(표 <5-1> 관련).

2)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활동 활성화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 안건 심의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이다. 그리고 상설 소위원회를 통하여 학부모와 지역 사회의 의견을 항상 수렴 할 수가 있어, 학교운영위원회의 분권적 역할을 할 수

54) 황용선, “학교단위 책임경영에 따른 책무성의 제고 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p. 51.

있으며, 소위원회의 종류 및 운영에 있어, 상설 소위원회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 사항에 따라 학교급별 특성과 실정에 맞게 적합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른바, '예·결산 소위원회',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해 심의할 '교육과정 운영 소위원회'는 상설 소위원회로 규정을 명문화할 필요⁵⁵⁾가 있고, 임시 소위원회는 제주도공립학교운영위원회구성·운영에관한조례에 심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학생 수련 활동 등의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등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 운영하여 소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인 경우도 학교 운영에 특별한 임무 수행을 위해 위원회 안에 별도의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영국인 경우 소위원회 활동을 강화하여 수시로 소위원회 모임을 갖는 등 일정한 권한과 임무를 부여하고 그 기능이 보장되고 있다.

3) 교육 수요자인 학생 의견 반영

학생도 교육의 주체로서 존중되고 대표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는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지역 인사만이 참여하게 되어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의 대상은 바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 내용 등이다. 방과후 특별활동, 학교 규칙, 수학여행, 급식 등, 심의 사항 대부분이 학생과 관련되어 있어, 모두 교육 활동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도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국과 독일인 경우에는 학생도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4) 학교운영위원장 피선출권 확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은 교원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피선출권이 없으나, 이에 대하여 교원위원도 위원장·부위원장 피선출권을 부여하거나 아니면, 학교별 재량에 맡기는 대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55) 고창규, "법령 조례 규정에 나타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양상".(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 자료).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0. p. 65.

2. 學校 運營의 專門化

학교 운영의 전문화란 전문적인 지식과 운영 기술을 가지고 교육 활동을 체계적이며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운영 활동을 말한다. 즉, 해당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등을 갖추어 이들의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다.

1) 운영 위원의 연수 강화

모든 운영 위원들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할 수 있는 능력 배양을 위한 체계적인 전문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설문조사에서도 '각종 연수를 체계적 실시'를 요구하는 비율이 46.8%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운영위원 자신도 전문성 부족을 큰 문제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이에 따른 단위 학교별 자체 연수가 필요하다.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 연수가 실시되고는 있지만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단위 학교 차원에 연수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해 보직 하다.

설문조사에서처럼 운영위원들은 '교육과정 해설' 과 '교육 관련 법규 해설' 등 교육 관련 전문성 내용을 연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여 줄 것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인 연수가 될 것이다. 또는 단위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회의 때마다 연수 자료 제공과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연구 발표회 참석 및 선진 학교 시찰 등의 연수도 필요하다.

2) 위원 연수 이수 의무화

학년초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은 학교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을 높일 수 있게 일정한 시수의 연수를 의무적으로 이수하는 제도 필요성'에 대한 위원별 집단 반응을 보면, '매우 찬성한다'와 '어느 정도 찬성한다' 비율이 72.1%로 나타나고 있어, 학년초 운영위원으로 선출된 후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의무적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어떠한 연수가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개인과 집단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 이들의 필요로 하는 연수 프로그램 요구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운영 위원들에게 전문성을 갖출 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위원 연수를 의무화하여 이수한 위원에게만 위원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3. 學校 運營의 民主化

학교 운영의 민주화란 단위 학교 운영 주체들에게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들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1)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 관계

설문조사 결과, 학교장은 학교경영의 최고 집행 책임자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직접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방안⁵⁶⁾에 대한 위원별 집단 반응을 보면, '매우 반대한다'와 '어느 정도 반대한다' 41.2%, '매우 찬성한다'와 '어느 정도 찬성한다' 비율이 40.8%로 나타나고 있으나,

교원위원은 '학교장을 구성원에서 제외하는 것을 반대하는 비율이 높고, 학부모 위원·지역위원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 위원들 간에도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먼저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취지에서 학교장을 당연직 교원위원이 되고 있다. 학교장이 당연직 위원에서 제외될 경우, 학교장은 학교경영에 대한 권한은 거의 없고, 학교운영 결정에 대한 책임만을 지게 되는 모순을 초래한다.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에게 학교경영 전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학교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한다. 학교장의 운영위원에서 제외는 단위 학교에서 정착화 단계로 들어간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를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원인 중 하나가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소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족 때문이라는 주장을 고려해야 한다⁵⁶⁾. 한편, 학교장은 운영위원과 학교장 역할 수행으로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고충을 이해하고 운영위원 모두가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위원장 피선출권에 대하여 제한이 없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학교인 경우도 학교장의 위상이 교사들의 대표자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충실히 수행하는 행정 관리자 혹은 집행 책임자로서 위상을 갖고 있다.

2) 운영위원 선출의 민주성 확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각시·도 조례에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학교 현장에서 위원 선출시 구체적인 일부

56) 고창규. 앞의책. 2000. p. 61.

사항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정하여지지 않아, 학교 구성원간에 마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⁵⁷⁾ 한 조직의 성패는 그 구성원의 면면과 역량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은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외국의 학교에서도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교사위원 선출시 완전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도 운영위원 선출에 특별한 조건 등으로 제한하지 말고 학교교육에 봉사하고 싶은 마음과 나아가 교육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자들을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선출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운영위원회 회의개최 최소 횟수 의무화

설문조사 결과 '각 학교에서 1년간('99 3- 2000. 2.현재)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회수'에 대하여 학교급별 집단에 나타난 사항을 보면, '연간 5-6회'이상 회의 개최 비율이 90.2%로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이 학교에서 평균 2개월에 1회 정도의 회의가 개최되고 있음을 볼 수 있으나, 초등학교에서는 연 4회이하 회의 개최한 비율이 14.2%인 것을 볼 때 이는 학교에서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 소집이 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연간 회의 개최 최소 횟수를 정하여 의무화 방안'에 대한 위원별 집단 반응을 보면, '매우 찬성한다'와 '어느 정도 찬성한다' 비율이 52.4%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만 회의 소집하여 운영하지 말고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여 학교 운영 사항을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들에게 알려주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제주도공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현재, 서울 연10회 이상, 대전 6회 이상 최소 회의 개최 횟수를 조례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지역도 있음) 연간 회의개최 최소횟수를 규정하여 운영될 때 학교 행정의 공개와 투명성이 보장 될 것이다.

4) 효율적인 회의 운영

설문조사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큰 문제점'으로 '형식적 회의'(36.1%)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어,

학교운영위원들은 운영위원 회의시 대체로 학교장의 중심이 되어 회의를 이끌어 간다고 보고 있고, 또한, 교원위원·학부모위원·지역위원들은 위원장이 회의

57)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서울: 교육부, 2000). p. 25.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수동적으로 학교장에게 이끌리는 회의 진행으로 과거 육성회 회의처럼 형식만 갖추어 회의 개최 시 학교장의 설명만 듣고 충분한 토론 절차 없이 안건을 원안 통과 처리하고 폐회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⁵⁸⁾

학교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의 대부분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효과적인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회의에 대한 기본 지식과 운영위원의 의무와 권리를 충분히 인식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학교측에서 운영위원들과 진지하게 토론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의사 결정을 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외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은 형식적이지 않고 진지하고 세밀하게 협의 운영하여 학생 학습 효과 극대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회의 결과를 모든 학부모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다.

4. 教育自治 實現을 위한 效率的 運營

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학교 단위의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하여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사의 교육행정에 참여로 지역 실정과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그 근본 취지로 하고 있다.

1) 학교 단위의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실시

학교운영위원회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도화 된 것이라는 점에서 단위 학교에서 수요자 중심 교육을 전개해 나가기 위해 학교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여건이나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 사이에 대화 통로를 제도화하여 그 지역사회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역에 필요한 기초 자료 수집과 다양한 자료 개발을 하기 위하여 교육행정 기관의 지원 아래 꾸준히 연구하여 실천되는 분위기를 조성되어야 한다.

외국의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단위 학교의 자율성,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58) 김수현,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p. 55.

2) 학부모·지역주민의 학교 교육행정 참여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부모·지역 주민의 학교경영에 참여가 교육 자치체에서 지향하는 바이다. 학부모·지역 주민이 학교경영에 필요한 재정 후원자의 수준을 벗어나 내 고장 우리 자녀의 교육을 스스로 맡아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이들의 인식 전환과 아울러 학교측에서도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 유도를 위한 적극적 교육·홍보 활동이 필요하다. 학교경영에 학부모·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부모들이 학교 특별활동,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 교사 보조자 등으로 참여함으로써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하고, 학교교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증대할 수 있다.

외국의 학교에서는 학교 운영에 참여하는 계 집단(교사·학부모·지역인사·학생 등)의 역할, 임무, 권한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학부모들의 참여와 권한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또한 자신이 속한 단체를 통하여 학교 의사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되고 있다.

5. 學校 運營委員의 姿勢

학교운영위원회가 당초 기본 취지대로 잘 운영되느냐의 여부는 무엇보다 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원인 운영위원 개개인의 태도와 자세 여하에 달려 있다. 학부모위원·교원위원·지역위원은 각자 학생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한 집단 의사 결정 기구로써 역할이 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운영위원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다음과 같다.⁵⁹⁾

1) 학교 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학교 운영위원이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요건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학교교육에 대한 애정과 올바른 이해이며 내 자녀를 위한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녀를 위한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관점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운영 과정에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참여 의지가 필요하다. 의식과 인식은 되어 있으나 참여하여 실천하려는 의지가 약했던 것이 우리의 태도였다.

59) 교육부, 앞의 책, 1996. p. 39.

2)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학교 운영위원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의 의견을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하도록 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부모 위원들은 일반 학부모들의 의견과 학급 및 학년 학부모회에서 논의되는 내용에 귀를 기울이고 그 내용들이 운영위원회에 제대로 전달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사회 인사들과 주민들의 학교교육에 대한 요구 사항에 귀기울이는 일이 필요하다. 교원 위원들 역시 교직원들이 바라는 학교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교직원들에게 전달 할 수 있도록 항상 교원들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3) 학교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어떠한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이해 관계인에 의해 운영되는 기구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학교를 지역사회의 한 공동체로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며, 내 자녀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자녀 교육을 위한 기구이다. 따라서 학교 운영위원회는 특정 집단 또는 개인의 이익이나 이해관계에 관여하지 말고 학교운영위원회가 지역사회의 공동체 교육 기구로 발전되어야 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학교경영에 적극적인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거나 학교 발전을 곤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대한 어려움을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기 위한 기구이므로 학교장이 학교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5)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교 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 아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는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또는 이익을 얻거나 알선해서는 안 된다.

第 VI 章 結論 및 提言

1. 結 論

교육 자치의 궁극적 목적은 교육 활동이 직접 전개되고 있는 단위 학교의 자치가 이루어지는데 있다.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단위 학교의 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분권화·전문화·민주화 등의 교육 자치의 원리가 단위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적용되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의 교육 체제는 철저하게 공급자 위주로 설계되고 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교육 서비스의 수요자인 학생·학부모·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나 의견이 학교 운영에 제대로 반영될 통로가 없었다. 학교운영위원회는 이처럼 공급자 위주로 획일화된 교육 체제를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 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학교운영위원회 제도가 교육 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면밀히 분석되고, 그 개선 방안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와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그에 기반 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연구·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는 위하여 첫째, 학교 운영의 분권화, 둘째, 학교 운영의 전문화, 셋째, 학교 운영의 민주화 등을 연구의 주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한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를 학교 단위 교육 자치에 초점을 두고 분권화·전문화·민주화의 원리로 정리하고 이 세 가지 영역을 학교운영위원회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의 준거로 설정하였다.

2)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시행의 주요 목적은 학교경영 조직에 교원·학부모·지역 인사의 참여를 통하여 그들의 역할과 참여의 필요성을 학교 단위 교육 자치의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3) 제주도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현황 분석과,

4) 우리 나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실태·현황 문제점과 개선 요구 사항을 교육 자치의 원리를 준거로 하여 분석 제시하였다.

5) 외국의 주요국의 학교운영위원회의 참여 조직 비교 및 시사점을 분석하여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하여 교육 자치 원리와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를 연계하여 고찰하였고, 조사 도구는 선행 연구물과 교육 관련 도서를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일선 학교 간사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질문지 초안을 만들고 교원위원으로 활동하였던 교육 연구사 및 교사들과 1차 토론 과정을 거쳐 제작,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6개교 611명 운영위원 설문 분석을 하였다.

학교운영위원회 실태 현황 설문조사 분석 결과는

첫째,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에서 1) '학교장과 독립된 별도 기구' 인식도 (53%), 2) 운영위원회 전문성 연수 미이수율이 54.9%로 나타남으로써 학교운영위원회 기본 취지 인식이 부족과 전문성 연수 참여율이 저조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에서는 심의 항목별 필요성 정도에서는 교육의 전문성을 요하는 영역에 대하여는 학부모위원이나, 지역위원들의 심의시에 충분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교원위원 선출 경우 '학교 운영에 건전한 비판을 하는 교사' 선출 비율(12.2%)이 낮으며 이런 현상은 중·고등학교 보다 초등학교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면에서 각급 학교에서 회의 개최 횟수가, 연 5-6회 비율이(54.7%)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2개월에 1회 정도 회의가 개최되고 있으나, 특히,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한 학년 동안 연 4회이하 개최한 비율이 14.2%로 나타나고 있어, 학교에서는 심의 안전 발생 요건 시에만 회의를 개최되고 있으며, 소위원회 구성 및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가 되지 않고 있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학생 의사가 잘 반영되고 있지 않고 있음을 나타나고 있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 평가에 있어서는 다른 항목보다 특히,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 실시 평가 비율이 낮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운영 성과에 대하여 교원위원들은 다른 위원에 비하여 종합적 운영 성과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 요구 자료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는

첫째, 분권화 영역에서

1)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어느 운영위원 중에서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가

에 대한 반응은 학부모위원 중에서(56.3%), 모든 위원 중에서(23.6%)순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에 따라, 위원장 적격자를 교원위원은 '학교장' 을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위원'을 지역위원은 '지역위원'을 위원장 적격자라는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2) 학교운영위원회 위상 및 성격은 현재와 같이 공립학교인 경우 심의 기구(39.1%)로 운영되는 것을 바라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교육 수요자인 학생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성 나타나고 있으며, 소위원회 활동 전망에 대하여는 회의적(懷疑的)인 반응 (50.0%)을 나타나고 있어, 분권화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전문화 영역에서 '전문성 있는 심의하기 위한 방안'으로

1) 각종 연수를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일(46.5%)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연수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2) 위원 연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찬성 비율이 72.1%로 나타나고 있다.

3) 전문적 연수 프로그램으로는 '교육과정 운영 해설'(36.9%)과 '교육 관련 법규'(24.3%)의 연수 필요성을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문화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민주화 영역에서는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에서 학교장 제외 방안으로 반대 비율이 41.2%, 찬성 비율이 40.8%로 나타나고 있다.

2) 학부모회 및 교직원 회에서 안건 발의 방안에 대하여는 찬성 비율이 79.6%로 나타나고 있다.

3) 운영위원회 연간 회의 개최 횟수 의무화 방안에 대하여는 찬성하는 비율이 52.4%로 나타나고 있어, 민주화의 요구가 크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

1) '학교 단위의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일' 이라는 비율이 41.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2) 운영위원회 효율적 운영 방안으로는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의 학교 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비율이 33.4%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 단위 학교의 교육 자치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기구로 운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태 현황 및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한 설문 분석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학교운영의 분권화

- 1)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과 독립된 별도 기구' 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를 잘 이해하여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적, 개방적 자세로 학교운영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 2)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 할 수 있는 소위원회 활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 3) 교육 수요자인 학생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
- 4)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피선출권을 제한하지 말고 확대하여 위원장 피선출 자격 여부 규정을 학교별 재량에 맡겨 선출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학교 운영의 전문화

- 1) 운영위원회 위원 연수를 강화하여 교육 관련 전문성 있는 심의 능력이 배양될 수 있는 전문 연수가 필요하다.
- 2) 위원 연수 이수율 의무화하고 위원들의 연수에 필요로 하는 한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조사하여 이를 고려한 연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다) 학교 운영의 민주화

- 1)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학교장과 운영위원으로 이중적 역할 수행에서 오는 고충을 모든 운영위원들의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 2) 운영위원회 위원 선출 시에 규정 준수와 구체적인 사항 등을 사전에 규정하여 학교 현장에서 민주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책임자인 운영위원이 선출되어야 한다.
- 3) 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최소 횟수를 의무화하여 운영위원들의 학교경영 참여 기회를 많이 부여하여 학교 행정의 공개와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4) 학교운영위원회가 대부분 회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는 의사 결정 과정에서 운영 위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하는 분위기에 의사 결정이 되어야 한다.

라) 교육 자치 실현을 위한 효율적 운영

- 1) 학교 단위의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되어야 한다.
- 2)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학교 교육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로 학교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마)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중 민주화와 전문화의 조화

교육 자치의 기본 원리중 민주화와 전문화의 원리는 대립적인 관계에 있으나, 이러한 원리들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교육 자치 실시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두 가지 원리의 조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제도적인 면과 운영적인 면에서 모든 운영위원 구성원은 의사 결정 전 영역에 동일한 방식으로 참여는 되어야겠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치 않은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결정은 각 구성원의 고유한 의사 결정 영역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각 운영위원 역할에 민주화와 전문화가 조화 될 때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것이다.

2. 提 言

학교운영위원회가 단위 학교 교육 자치 기구로 정착되고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과 더불어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실태·현황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제주도내 공립 초·중·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에 국한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을 찾아 농·어촌 학교와 도시형 학교, 초·중·고등학교 별로 비교하여, 앞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제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더 연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부모 및 지역 인사들에게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본 취지와 참여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학교교육에 대한 사전 정보를 알리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예컨대, 학부모에 대하여는 교지나 가정 통신문 등을 통하여, 지역 인사에게는 주민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심을 갖고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사항 대상은 바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 내용들이다. 그런데도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크게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중학교·고등학교 학생 대표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넷째,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 사항을 공립학교인 경우 '심의한다'로 되어 있으나 모든 안전 처리를 심의 기구에서 심의 사항으로 운영하지 말고, 학교에서 안전에 따라 의결 사항, 자문 사항, 심의 사항 등으로 사전에 규정하여 사안에 따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설 소위원회 운영을 규정 등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이른바, '예·결산 소위원회',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 방법에 관해 심의할 '교육과정 운영 소위원회'는 상설 소위원회로 규정하여 운영 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학교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과 전문성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하여 위원들의 직능에 맞는 전문 연수가 계속될 수 있도록 연수 자료를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제작으로 운영위원 연수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외부 전문인을 중심으로 학교운영위원회 평가단을 구성하여, 각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책무성과 자율성을 제고시키고, 학교 단위 교육 자치가 일선 교육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운영 실적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에 차등을 줌으로써 학교 단위 교육 자치 실현에 학교운영위원회 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參 考 文 獻 ◇

1. 國內文獻

가. 書 籍

-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의 실제』 서울: 교육부, 1996.
-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서울: 교육부, 1998.
- . 교육부, 『학교운영위원회 길잡이』 서울: 교육부, 2000.
- . 권이중, 『사회 교육 개론』 서울: 교육과학사, 1990.
- . 김종철,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육과학사, 1988.
- .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 협의회, 『교육 백서』 서울: 도서출판 풀빛, 1989.
- . 박종렬, 『교육행정의 발전과 전망』 서울: 한국교육행정학회편, 1995.
- . 임성한, 『관료제와 민주주의』 서울: 법문사, 1986.
- . 정태범 외, 『학교·학급 경영론』 한국교육행정학회, 서울: 하우, 1995.
- . 정충영외, 『spss win을 이용한 통계분석』 서울: 무역경영사, 1997.
- . 주삼환, 『장학 교장론 특강』 서울: 성원사, 1988.
- . 최창호, 『지방 자치학』 서울: 삼영사, 1997.
- . 한국교육행정학회, 『교육 조직론』 서울: 도서출판 하 우, 1995.

나. 論 文

- . 강정숙,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조사 연구”,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 고창규, “법령 조례 규정에 나타난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양상”,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대한 세미나 자료),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0.
- . 구자현,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실태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 권영주,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 김수현,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실태 분석”,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김유중,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의식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0.
- 김태완 외, “교육자치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89-14, 1989.
- 김운태, 정대범, 노종희, “학교경영의 민주화 및 전문화 방안 연구”, 서울,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1991.
- 신호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참여 유형에 관한 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9.
- 이계준, “교육자치제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행정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 이공숙,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의식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 정현웅,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분석연구”, 세종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8.
- 조수연, “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사례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경영 체제개선 방안연구”, 연구보고서 94-16, 1994.
- 한국교육개발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95-1 1995.
- 황용선, “학교단위 책임경영에 따른 책무성의 제고 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7.
- 홍기성,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방안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다. 資 料

- 경기도교육청,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수자료, 열린시대·열린학교 운영”, 장학 자료, 1998.
- 교육개혁위원회, “세계화·정보화 시대를 주도하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방안”, (제2차 대통령 보고서) 1995.
- 교육개혁위원회, “지방교육자치제도 개혁방안”, 제3차 공청회, 1995.
- 대한민국 “헌법령집”, (헌법·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교육기본법·초·중등 교육법·초·중등교육법시행령).
- 유현숙, “학교단위 책임 경영제 그 성공 전략은 무엇인가?”, 교육월보 제159호, 1995. 3월호.

2. 國外文獻

Bridges, E. M. "A Model for Shared Decision Making in the School Principalship", *Educational Administration Quarterly*, vol. 3, No.1.(1967).

Derrick W. R. and Coppock, J. T. *Public Participation in Planning* London: John Wiley & Sons, 1977.

Hoy, W. K. & Miskel, C. G.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ory, Research and Practice*(3rd ed.) (New York: Random House, 1987).

Leslie W. Kindred. *The School and Community Relations*. (New Jersey: Prentice-Hall, 1987).

Martin. R. C. *Grass-Root Democracy* New York : Alabama University Press. 1978.

Owens, Robert G. *Organizational Behavior in Education* (2nd ed.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Inc.. 1981).

Simon, Herbert A. *Administrative Behavior*. New York: Mcmillan century, 1957.

SUMMARY

A Study on the Reform Measures of the School Administration Committee for the Realiz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Shin Tae Kyun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Lee Kyung Won)

The ultimate purpose of educational autonomy means the autonomy of the unit schools in most modern regions. So the principle of diversity, specialization, and democracy should be applied to our unit schools.

To the present, we have thoroughly planned and operated our educational system on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upplier. There is no correct passage of communication from the educational demander such as students, their parents, and the communities.

It is therefore vital to investigate and propose a reform measure elaborately in the aspect of realiz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What's the obstacles in the educational system?", "What's the undesirable result in operation?" We should cope with these new challenges.

Thus this paper's main objects are focused on 1) the diversity, 2) the specialization, and 3) the democracy of school administration. I present a reform measure for the school administration committee analyzing the actual state and problems.

First, the Decentraliz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1) The recognition of the committee's independence from the principals should be spread widely and it is necessary to making the positive and open atmosphere associated in school administration.

2) The operation of sub-group committees should be activated leading parents' positive interests and their participation.

3) Some institutional devices should be established to reflect the opinion of students as consumers.

4) The eligibility of the school administration committee should be expanded and the qualification of the chairman should be committees to each school's judgement.

Second, the Specializ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1) The study and training of committee members should be reinforced to raising the ability of deliberation.

2) The committee should make it their duty to complete the study and training, and should investigate the study developing new programs.

Third, the Democratiz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1) There should be a cooperative attitude between the principal and the committee understanding each part's importance and difficulties.

2) A well-qualified person should be elected by democratic and fair procedure observing regulation and detailed subjects.

3) The minimum period fixed for a meeting should be imposed upon committee members allowing for openness and clearness of school administration.

4) School administration committees are operated centering around conferences. So, many decisions should be made through serious conferences for the effective operation of the committee

Finally, effective oper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educational autonomy.

1) New education programs should be invented and operated which are proper to the real state of the unit schools.

2) Positive public in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which properly arouses the interest of parents and their participation.

With the reform measures, I present some suggestions for the fixations and realization of school administration committees as the unit educational autonomy.

First, many more programs that reinforce the operation of the school committee should be researched to effect some national variables through the comparison of each schools.

Second, we should devise a proper means to inform the former information of school education to the parents and men of society inspiring basic educational objects and their particip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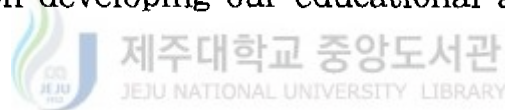
Third, there should be a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device that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students, the main body of every educational system.

Fourth, the function of the school administration committee should be divided into detailed cases such as decision making, consultation, deliberation, and so on in actual school places prescribing particulars.

Fif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standing a sub-committees in the law, especially a sub special budget-settlement committee.

Sixth, the study and training of the committee should be reinforced for more developed, democratic, and specialized decision-making.

Finally, a group assigned to evaluate educational policies should be consisted of outside specialists and the result of their evaluation should be available, to assess the differences of administration developing our educational autonomy.



【附 錄：設 問 紙】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학교운영위원회 개선 방안』에 관한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께 경의를 표합니다.

직접 찾아 뵙고 부탁을 드려야 옳으나,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지면상으로 어려운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설문지는 교육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실태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사실 그대로를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의 응답 내용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바쁘시더라도 한 문항, 한 문항 읽어보시고 끝까지 응답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2000. 2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과정) 신태균 올림(☎752-2536)

지도교수 이 경 원

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위원으로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 _1) 3회이상 _2) 2회 _3) 1회 _4) 없다

Ⅲ.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3.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심의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심의할 각 항목에 대하여 그 필요성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1.매우 필요하다	2.어느정도 필요하다	3.그저 그렇다	4. 어느정도 필요하지않다	5. 전혀 필요하지않다
1) 학교현장·학칙 및 규정의 제·개정					
2)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3) 교과서 및 부교재 선정					
4) 특별활동에 관한 사항					
5)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방과후·방학중 유상프로그램 실시					
7) 학교의 예산 및 결산					
8)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9) 수학여행·학생야영 수련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10)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시					
11)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N.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4. 귀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은 어떤 인사가 선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_1) 경제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는 인사 _2) 교육현장 유경험 인사
_3) 일반행정 유경험 인사 _4) 지역사회에서 저명한 인사
_5) 동창회 인사 _6) 기 타()

5. 귀교의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은 어떤 인사가 선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_1) 경제적으로 학교에 도움을 주는 인사 _2) 교육현장 유경험 인사
_3) 일반행정 유경험 인사 _4) 학부모 사회에서 저명한 인사
_5) 평소 학교지원 활동 대표로 많이 참여하고 협조적인 인사
_6) 기 타()

6. 귀교의 학교운영위원 중 교원위원은 어떤 분이 선출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_1) 학교경영에 건전한 비판을 잘하는 교원
_2) 부장 보직을 맡고 있는 교원 _3) 경력이 많은 교원
_4) 신망이 두터운 교원 _5) 학교경영에 협조적인 교원
_6) 기 타()

7. 귀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선출과정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1) 매우 민주적이다 _2) 어느 정도 민주적이다 _3) 그저 그렇다
_4) 어느 정도 비민주적이다 _5) 매우 비민주적이다

V.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8. 귀교에서 1년('99 3.-2000. 2 현재)동안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를 몇 회 개최하였습니까?

- _1) 연 4회 이하 _2) 연 5회 -6회 _3) 연 7회 -8회
_4) 연 9회-10회 _5) 연 11회 이상

Ⅱ.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평가

13. 현재까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들 각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용	1. 매우 그렇다	2. 어느정도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정도 그렇지 않다	5. 전혀 그렇지 않다
1) 단위학교의 교육자치가 활성화 되었다					
2)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3) 교육효과가 제고되었다					
4) 부모들이 학교발전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5) 학교의 행정이 보다 더 공개적이다					
6) 학교행정에 민주성이 확립되었다					
7) 교육자와 학부모간에 신뢰가 확립되었다					
8) 학교내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었다					
9) 지역사회 주민들의 학교운영에 대한 관심이 제고 되었다					

14. 이제까지의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결과 종합적으로 성과를 평가할 때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 1) 매우 성과가 있다 2)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 성과가 없다 5) 전혀 성과가 없다

15. 그 동안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신 결과 “학교운영위원회” 기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필요한 기구이다 2) 어느 정도 필요한 기구이다
 3) 그저 그렇다 4) 어느 정도 필요 없는 기구이다
 5) 매우 필요 없는 기구이다

25. 심의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1/3이상 위원 의 요구 시 발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안건 심의를 위해 학부모회와 교직원 회의(교무회의)에도 안건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1) 매우 찬성한다 _2) 어느 정도 찬성한다 _3) 그저 그렇다
_4) 어느 정도 반대한다 _5) 매우 반대한다

26. 학교운영위원회의 회의 일수는 규정상은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으나 회의 개최 최소 횟수를 정하여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_1) 매우 찬성한다 _2) 어느 정도 찬성한다 _3) 그저 그렇다
_4) 어느 정도 반대한다 _5) 매우 반대한다

라. 기타 영역

27.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육 자치 기본 취지에 맞게 가장 먼저 실현되어야 할 항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1) 교육감과 교육위원 등 지방교육자치기관 구성원의 선출에 참여하는 일
_2) 학교 단위의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는 일
_3) 학부모와 지역 주민이 학교 교육행정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
_4) 교육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 활동을 하는 일
_5)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에서 탈피하는 일

28. 학교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이 있으면 기타 란에 적어 주십시오)

- 1) 학교장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_2)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에 교육 행정기관의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_3) 교사·학부모·지역사회 인사들의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_4) 학교운영위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가 필요하다
_5) 학교운영위원 선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 타)

29.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위원·학부모위원·교원위원이 특히 노력하여야 할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